

2022년 부산·울산·경남 장애인 급여관리 현황등 모니터링 결과발표회

2022. 11. 25.



2022년 부산·울산·경남 장애인 급여관리 현황등 모니터링 결과발표회

2022. 11. 25.



경상남도
GYEONGNAM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소장 최진열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회에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강순익 과장님,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약 4개월간 모니터링 조사를 충실하게 수행해주신 송정문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님과 직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장애인들은 특히 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과 개선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부산인권사무소는 올해 초 관할구역인 부산, 울산, 경남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부울경 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의회’는 매년 부울경의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세부 논의 주제를 정하고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협의체입니다.

올해는 장애인들의 급여관리 현황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발굴을 통한 지원정책 등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과발표회는 장애인들의 급여관리 현황등 모니터링 결과를 통하여 인권침해적인 부분은 무엇이고 또한 그러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선방안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모니터링 결과와 사례발표 등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 생산적인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부산인권사무소도 오늘 결과발표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결과발표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5.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소장 **최진열**

환 / 영 / 사

반갑습니다.

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 내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애인 권익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경남, 부산, 울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각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수행중인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장애인 지원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각 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정부·지자체·관련 단체·장애인 당사자 등의 노력으로 각종 법률이 제정되고, 제도가 정비되는 등 장애인 인권보장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인권 침해를 당하였음에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이 많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이와 같은 장애인권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소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후 2021년부터 권익옹호기관과 공동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는 발달·뇌병변장애인의 급여관리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오늘 각 지역 권익옹호기관 활동 및 경남도 실태조사 사례 공유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효율적인 협업방안을 도출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 없는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결과발표회를 공동으로 준비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최진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과장 강 순 익



CONTENTS

1. 2022년도 장애인 급여관리 현황 모니터링 결과 1

도 여 옥 /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애학연구소 연구원

2. 부산·울산·경남 지역별 관련 사례 등 53

●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초생활수급비 관련 사례 55

김 태 훈 /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울산광역시 장애인 급여관리 침해 및 경제적착취 사례 63

주 우 민 /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장애인 급여관리자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한 경남지역 사례 및 제언 ... 77

송 정 문 /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장애인 인권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87

장 진 영 /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담당

2022년도 장애인 급여관리 현황 모니터링 결과



2022년도 장애인 급여관리 현황 모니터링 결과¹⁾

도 여 옥 /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애학연구소 연구원

I 서 론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의해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9월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 발달·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개인이 가진 취약성으로 인해 학대 피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외부에 알리기 힘들어 인권침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접 방문하여 학대 등 인권침해 유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2021년도에 실시된 경남지역 1인 발달·뇌병변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학대 예방 실태조사(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에서 급여관리자에 의한 학대 가능성이 확인되어 급여관리자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급여관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경남도 내 급여관리자가 지정된 발달·뇌병변장애인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경남도 내 급여관리자가 지정된 발달·뇌병변장애인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급여관리자 지정 장애인 현황

지역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전체
계 (명)	135	184	110	55	104	106	65	104	24	27	36	32	31	51	46	26	18	41	1,195
비율 (%)	11.3	15.4	9.2	4.6	8.7	8.9	5.4	8.7	2.0	2.3	3.0	2.7	2.6	4.3	3.8	2.2	1.5	3.4	100.0

- 1) 본 발제문은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경상남도 및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2022년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실태조사 : 급여관리자가 지정된 발달·뇌병변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의 내용으로서, 이 연구를 수행한 아래 연구진을 대표하여 발제함을 밝힌다.

연구책임 송 정 문(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주 연구원 조 한 진(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애학연구소 소장, 대구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도 여 옥(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애학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방 수 연(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권익지원2팀장)
 정 유 리(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권익지원1팀장)
 김 시 은(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권익지원2팀 주임)
 이 종 범(창원대학교 통계학과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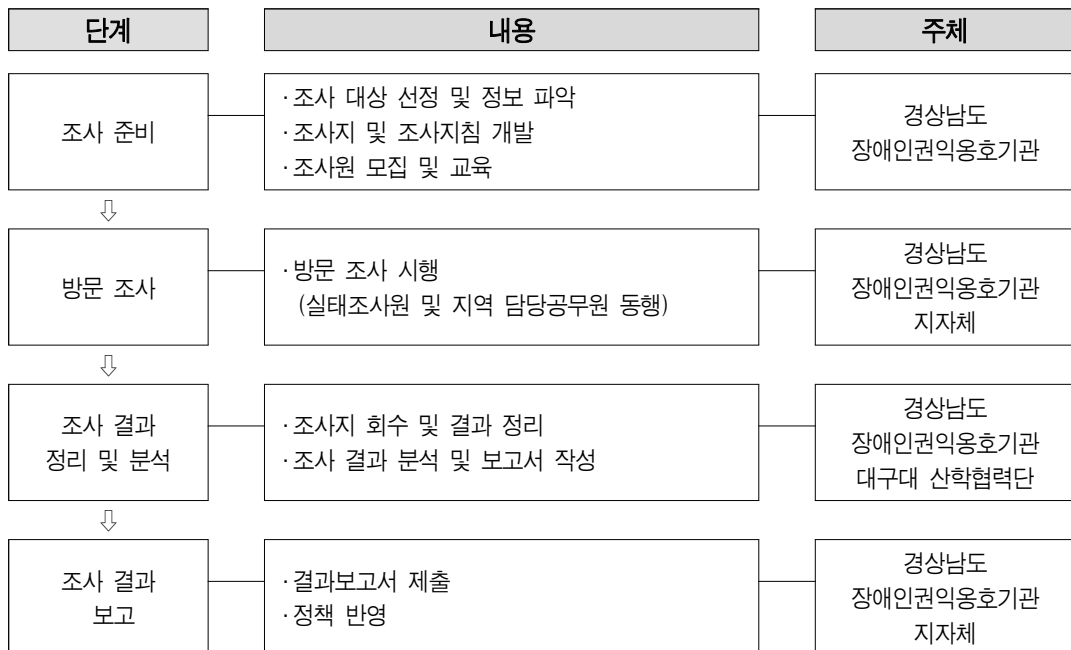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급여관리자(타인)가 지정된 발달·뇌병변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경상남도 실태조사 결과 및 관련 사례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관련 인권침해의 내용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향후 대안을 찾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2. 조사수행 체계

본 실태조사는 경상남도 내 해당 지역 담당 공무원과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모집·교육한 실태조사원이 조사참여자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고, 조사에 앞서 조사팀에 대하여 실태조사 배경 및 관련 규정의 설명, 담당 지역 배정, 실태조사지를 토대로 한 조사 방법 교육, 면담 시 태도 교육 및 실태조사 시 유의사항 안내(단원증 패용 등) 등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본 실태조사의 조사원은 경상남도 주무 부서에서 지정한 후 본 기관의 실태조사 교육을 이수한 지역별 담당 공무원과 민간 위촉 조사원이다. 민간 위촉 실태조사원은 1년 이상의 인권 활동 경력을 지닌 신청자를 모집하여 본 기관의 실태조사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완료 후 결과 확인 및 분석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상의 조사수행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조사 수행 체계

3. 조사 개요

가. 조사 항목

조사지는 방문조사표로, 조사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조사 항목

구분		내용
방문 조사표	일반 현황	성명, 출생 연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급여관리자
	기본 조사	급여관리자와의 관계, 주거 형태, 동거 여부, 방문 정도, 통장의 소유자, 도장의 소유자, 지불카드의 소유자, 용돈 주는 사람, 원하는 물품구매, 지출보고, 차용 여부, 교체 필요 여부
	학대 등 인권침해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유기나 방임

나. 조사 기간

2022년 2월 조사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조사표 및 조사지침서 개발이 5월 말까지 진행되었다. 이를 토대로 한 방문 조사는 2022년 6월부터 8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다.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경남도 내 거주지를 둔 발달·뇌병변장애인 총 355명이다. 이 중에서 최종적인 분석대상은, 실태조사원이 방문하였으나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례, 즉 조사거부, 소재지 불명확, 장기입원으로 면담 불가 등의 사례와 의사소통 불가로 설문지 답변이 누락된 사례를 제외한 319명이다.

라. 자료수집 및 자료 분석

자료수집은 조사원이 조사참여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면담하는 직접 방문 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수집된 조사지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오류나 누락 사항이 있는지 재검토된 후 곧바로 데이터 입력 작업이 진행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항별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하였으며, 개방형으로 작성된 학대 피해 내용은 학대 유형별로 범주화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II

장애인 학대와 급여관리자

1. 장애인 학대

가. 학대의 개념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복지법」은 제2조 제3항에서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대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신체적, 언어·정서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기본적으로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행위나 유기, 자신을 스스로 돌보지 않는 자기 방임행위이다(김동기·박수지, 2013).

나. 학대 유형

장애인 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유기 또는 방임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별 학대에 대한 정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 장애인 학대의 유형과 정의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신체, 물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에 폭행, 상해 또는 고통을 가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정서적 학대	언어 또는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경제적 학대	재산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를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사용·관리하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또는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동산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복지급여와 소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포함됨
방임·유기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친권자,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부양·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의미함

출처 : 서동명 외, 2016; 이동석 외, 2014, 2021

신체적 학대는 신체, 물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에 폭행, 상해 또는 고통을 가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다. 신체 일부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 및 가혹행위는 물론, 원치 않는 수술이나 신체를 억압, 감금, 출입 통제 등을 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이다.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유사 강간, 준강간 등의 행위와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정서적 학대는 언어 또는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욕설·조롱·비난하는 행위,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그리고 선택권·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경제적 학대는 재산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를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사용·관리하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또는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이다. 공적 급여를 포함한 재산을 함부로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대출을 받거나 보증계약을 체결 또는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그리고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다.

방임 및 유기는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이다. 원치 않는 곳에 보내고 연락을 끊는 행위,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보건·의료 제공을 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일상적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된다.

2. 발달·뇌병변 장애인 학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는데,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로 구분된다.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되는데, 발달장애는 다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로 구분된다. 지적장애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는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뇌병변장애는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 학대 전담 기관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20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에 의하면, 2020년 전체 장애인 학대 사례 중 발달장애인 학대 사례가 69.6%(702건)로 가장 많았는데, 전체 유형 중 지적장애인이 6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지체장애인(9.8%), 뇌병변장애인(5.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을 합하면 75.1%로 매우 높았다.



장애인 중 학대 피해에 가장 취약한 지적장애인의 학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노수희(2016)의 연구에서는 지적장애가 가지는 특성 중 하나인 지적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함에 어려움을 가져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의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우며 학대 상황에 적절히 방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약취와 유인으로부터 지적장애인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의 취약성에 있어서,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는 지인들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하여 볼 수 있었고,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적장애인의 경우에 학대 피해 비율이 더 높았다. 가족들과 동거하는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비율이 다른 거주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 지적장애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제공자들의 돌봄 스트레스가 학대의 형태로 지적장애인에게 표출됨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학대 피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고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메커니즘을 보다 구체화하여 그에 따른 학대 예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재호(2022)는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착취 피해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서 발달장애인 피해는 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은 경제적 착취 피해 외에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등 다른 유형의 피해도 같이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는 경제적 학대 중에서 노동력 착취에 의한 범죄는 줄어드는 반면, 대출, 휴대폰 개통, 재산에 대한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기망의 행위는 과거와 현재 동일하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지한다는 사실, 연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거나 계약상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는 점,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미약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저질러지고 있다고 하였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²⁾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은 보행 등 동작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노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받거나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 또 적극적인 법률·정책 지원, 복지 서비스 지원 등을 받고 있지도 않은 형편이다.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례는 인권센터의 차별상담 내용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한 여성장애인의 경우,³⁾ 수동휠체어를 보장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지원사가 당사자의 사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잔소리를 하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하였다. 시각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뇌병변 1급 여성장애인의 경우,⁴⁾ 휴대폰 미납요금에 대한 독촉 전화를 받아 알아보니 당사자 명의의 휴대폰이 본인의 동의 없이 하나 더 개통되어

2) e마인드포스트, 2021.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5241>

3) 뇌병변장애인 인권센터, 2017. http://kshbas.web2002.kr/m/business/human.php?ptype=view&id_x=344&page=1&code=case

4) 뇌병변장애인 인권센터, 2017. http://kshbas.web2002.kr/m/business/human.php?ptype=view&id_x=346&page=1&code=case

있었다. 또 60대 뇌병변장애 남성의 경우,⁵⁾ 가정 내에서 아내와 아들들로부터 소외되고 일상적인 학대 상황에 놓여있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는데, 수급비의 경우도 아내가 전권을 가지고 관리하며 당사자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신장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어 식이조절 및 건강관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나, 적절한 식사 제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집에서는 대부분의 식사를 빵으로 하고, 점심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내로부터 몇 차례의 위협적인 폭력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복지관 등에서 진행하는 노인학대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였으나 큰 변화가 없었고, 계속되는 위협상황과 위협을 느낀 당사자가 경찰 신고를 한 적도 있다고 보고되었다.

3. 급여관리자 지정 및 관리 방법

가. 급여관리자 지정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2)에 따르면 급여관리자 지정대상은 무연고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사람으로 수급자 단독가구와 위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들로만 구성된 가구를 포함한다. 그리고 동거하는 보장가구가 아닌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도 급여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

세부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무연고 장기입원자’라 함은 6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무연고자를 말한다.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치매 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으로 치매의 원인 질병과 관계없이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상 일정 점수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노인 보건복지 사업안내(치매 조기검진 사업) 참조).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사람’이란 상기 규정 외에 아동 단독가구, 장애 상태, 의사능력 정도, 생활실태 등 개인별 차이를 감안하여 급여관리의 내실을 위하여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급여관리자 지정 제외 대상

급여관리자 지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① 법원을 통해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 ②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급여 관리·사용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이나, 본인이 타인의 급여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중 ②, ③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급여 본인 관리 확인서(서식 40호)를 수급자

5) 뇌병변장애인 인권센터, 2017. <http://kshbas.web2002.kr/m/business/human.php?ptype=view&id=x=349&page=1&code=case>



로부터 제출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일상적 의사소통, 물품구매 시 거스름돈 계산, 은행 계좌 입출금 정리, 급여지출 계획 등 개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본인 관리 확인서 서식 담당자 의견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의사능력은 있으나 거동이 불편하여 급여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의 동의하에 급여관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다. 급여관리자 지정

우선적으로, 수급자의 직계존비속(며느리, 사위, 계부모 포함) 및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자 중 급여관리와 사용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한다. 부양의무자 등이 없거나 부양 기피, 원거리 거주, 부당한 급여사용 우려, 부양의무자의 장애·정신질환 등으로 급여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재가복지 담당자, 의료기관 복지담당자, 교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복지위원, 이웃 등 수급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지원이 용이한 지역 인사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한다.

급여관리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수급자 수는, 일반 수급자의 급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3명 이내, 무연고 장기입원자 또는 보장시설 외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의 급여를 관리하는 경우는 10명 이내로 하되, 급여관리자 1인이 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일반 수급자와 병원·시설 입소 수급자의 수는 합산하여 10명 이내로 한다(예 : 급여관리자 A가 일반 수급자 3명의 급여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병원·시설 입소 수급자 7명의 급여까지 관리 가능).

급여관리자 지정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며, 급여관리자 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3년 단위로 지정기간을 자동 연장한다. 급여관리자 지정 시 동의서 작성, 지정서 교부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급여관리 사실과 책임의 인지를 유도한다. 친족, 시설·의료기관 관계자 외의 사람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되어 수급자의 급여를 관리하는 경우, 적정한 급여관리를 격려하고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인센티브 제공을 권장한다.

라. 급여관리 방법

급여관리자는 급여를 지출한 경우 지출내역 기록 및 증빙자료(영수증)를 관리한다. 급여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급여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 등 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지출을 허용한다. 자동이체·체크카드 사용 시 통장기재 사항만으로 지출내역 점검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장관리로 지출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여기서 체크카드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이며, 거래 즉시 출금되는 직불형 카드를 말한다.

마. 급여관리자 변경

급여관리자가 급여관리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관리자가 급여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관리실태 점검 결과 급여관리자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포함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급여관리자를 변경해야 한다.

바. 수급자 전출입 시 조치

급여관리자가 지정된 수급자가 전출한 경우에 해당 수급자의 급여 관련 정보를 수급자 전입지에 통보(필요시 관련 정보 송부)하고, 급여관리자가 지정된 수급자가 전입한 시·군·구는 필요시 급여관리자 변경 등의 조치를 한다.

사. 보장시설 외 시설 입소자 및 무연고 장기입원자의 급여관리

1) 보장시설 외 시설 입소자

보장시설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시행규칙 제4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제6편 보장시설 참조)을 말한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은 아니나 동 시설에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설장 등 시설 관계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한 후 반기별로 급여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미신고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신고시설로 전원 조치하되, 그 이전까지는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공동 급여관리자를 지정·관리한다. 또한 시설장과 시설입소자 사인(私人) 간 계약 체결에 의한 입소비 명목으로 납부한 생계비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세입 및 세출로 편성·운영하고 시설 담당 부서에서 관리(지도·감독)한다.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시설 관계자의 급여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을 참조하되, 횡령, 개인 착복 등 그 비위의 정도가 행정처분의 수준을 넘는다고 판단될 때는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2) 무연고 의료기관 장기입원자

무연고 의사 무능력(미약)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수급자 주소지 보장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한다. 읍·면·동장은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급여관리자를 지정한 후 반기별로 급여관리실태 점검을 한다. 수급자 주소지 보장기관은 관외 지역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수급자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 소재지 보장기관과 협의하여 급여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4. 급여관리 실태

가. 급여 관리(사용) 실태 점검

반기별 점검 대상은 급여 관리·사용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이나 타인이 급여를 관리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아 급여관리자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와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친족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직계존속의 범위는 대상자의 부모 및 (외)조부모), 보장시설 외 시설 입소자 또는 무연고 장기입원자의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가정의 위탁부모로서 보호 중인 수급자의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수급자의 이웃, 지역 인사 등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등이다.

연 1회 점검 대상은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또는 「민법」상 3촌 이내 친족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단, 수급자의 직계존속이나 3촌 이내 친족이 수급자의 병원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거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치료비 결제, 물품 구매 대행 등 보호자 역할을 지속하는 기간은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 가능)이다.

급여관리 점검 제외 대상은 법원을 통해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와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나. 급여관리 점검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까지 급여관리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읍·면·동에 시달린다. 읍·면·동장은 급여관리 점검계획에 따라 반기별 또는 연 1회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보고기한은 반기별 점검은 매년 7월 15일, 12월 15일, 연 1회 점검은 매년 12월 15일이다. 점검 내용은 현금인출 여부, 통장 소지자, 지출 내역과 영수증의 일치 여부, 급여 주요 사용처 및 타인 급여 인출·사용 여부 등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 결과를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장·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연 2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보고기한은 7월 31일, 12월 31일이다. 읍·면·동장은 관할 행정구역 안에 급여관리 점검 대상이 다수인 경우로 기관 여건상 급여관리 점검이 어려운 때에는 시·군·구 사업 부서에 행정지원 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복지급여 관리 실태조사의 예

급여관리자 지정의 증가에 따라 급여관리자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따라서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체장애 70대가 농장 컨테이너에 숙식하면서 수년간 임금착취를 당한 사례, 장애인 복지급여 2억 7천만 원 횡령 시설운영자 적발 사례, '타이어 노예' 학대도 모자라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채 매달 적금을 넣은 사례 등이 뉴스에서 보도되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지적장애인 등 의사 표현이 어려운 수급자에 대한 급여 횡령 및 노동력 착취 등이 매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 2018).

2021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급여관리자 부정행위에 관한 많은 사례가 형제, 배우자, 동거인들에게서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⁶⁾ 또한 최 의원은 지자체의 점검 지침 위반, 급여관리자 지정과 자격 유지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보건복지부의 관련 제도 개선과 검토를 촉구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급여관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아직 제한적이다.

경기도(2018)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사 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 적정 여부에 관한 조사'에서 대표적인 부정 사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 무능력자 복지급여의 타 목적 사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사 무능력자 급여관리 부적정, 동의 없는 출금, 타 명의로의 이체, 동의 여부와 증빙자료 확인 불가 등이 발견되었다. 적발된 사례의 내용을 보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 등 의사 무능력 수급자의 급여를 관리하는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개인 생활비로 지출, 개인 사업비로 임의 사용, 급여관리자 명의로 적금 및 보험에 가입하는 등 급여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사회복지전산시스템(행복e음) 등록이 다수 누락되어 급여 전산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연수구(2019)의 급여관리에 대한 지자체 감사에서는 의사 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대상자 임에도 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사례, 점검은 하였으나 부적정한 내용이 있음에도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지 않은 사례, 내용상 충분히 복지급여의 부정 사용(횡령)이 확인됨에도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처럼 급여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에 한정되어 있고, 지자체의 점검 의무에 대한 감사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급여관리에 대한 점검에서 경제적 학대와 관련된 급여관리 방법에 관한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경제적 학대,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 방임 및 유기까지 범위를 넓혀 학대 조사를 추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6) 최혜영 의원 발언, <https://www.youtube.com/watch?v=Ke5A3YWzbBY>



실태조사 결과

1. 일반 사항

가. 성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60.5%(193명), 여성이 39.5%(126명)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응답자의 성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남성	193	60.5
여성	126	39.5
합계	319	100.0

나. 연령대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연령대는 60대가 24.1%(77명), 40대가 19.4%(62명), 50대가 18.8%(60명), 30대가 16.3%(52명)이었으며, 다음으로 70대 6.9%(22명), 10대 6.6%(21명), 20대 6.3%(20명), 80대 1.6%(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30대에서 60대의 응답자가 전체의 78.7%를 차지하였다.

〈표 5〉 응답자의 연령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10대	21	6.6
20대	20	6.3
30대	52	16.3
40대	62	19.4
50대	60	18.8
60대	77	24.1
70대	22	6.9
80대	5	1.6
합계	319	100.0

다. 거주지역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진주시가 14.7%(4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다음으로 창원시 12.2%(39명), 김해시와 통영시 각각 8.5%(27명), 밀양시 7.2%(23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 응답자의 거주지역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거제시	16	5.0
거창군	5	1.6
고성군	8	2.5
김해시	27	8.5
남해군	9	2.8
밀양시	23	7.2
사천시	15	4.7
산청군	8	2.5
양산시	22	6.9
의령군	6	1.9
진주시	47	14.7
창녕군	17	5.3
창원시	39	12.2
통영시	27	8.5
하동군	14	4.4
함안군	8	2.5
함양군	12	3.8
합천군	16	5.0
합계	319	100.0

라. 장애 특성

1) 주 장애 유형

응답자의 주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95.0%(30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다음으로 뇌병변장애 4.7%(15명), 자폐성장애 0.3%(1명) 순으로 나타났다. 즉, 발달장애인 응답자가 95.3%(304명), 뇌병변장애인 응답자가 4.7%(15명)이었다.



〈표 7〉 응답자의 주 장애 유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발달장애	지적장애	303	95.0
	자폐성장애	1	0.3
뇌병변장애		15	4.7
합계		319	100.0

2) 중복장애 유형

중복장애가 있는 응답자는 6.3%(20명)였다. 이 중 주장애가 지적장애인 중복장애가 가장 높은 비율(90.0%, 18명)이었는데, 중복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와 정신장애 각각 20.0%(4명), 청각장애 15.0%(3명), 언어장애 10.0%(2명), 언어장애와 치매가 있는 경우와 뇌졸중 각각 5.0%(1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장애가 뇌병변장애인 중복장애 비율은 5.0%(1명)이었는데, 언어장애를 동반하고 있었다. 또 자폐성장애와 시각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5.0%(1명)로 나타났다.

〈표 8〉 응답자의 중복장애 유형

(단위 : 명, %)

주장애 유형	중복장애 유형	빈도	비율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3	15.0
	지체장애	4	20.0
	정신장애	4	20.0
	청각장애	3	15.0
	뇌졸중	1	5.0
	언어장애	2	10.0
	언어장애 + 치매	1	5.0
자폐성장애	시각장애	1	5.0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1	5.0
합계		20	100.0

3) 장애 정도

응답자의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가 99.4%(317명)로 높은 비율이었으며, 심하지 않은 장애는 0.6%(2명)로 나타났다.

〈표 9〉 응답자의 장애 정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심한 장애(중증)	317	99.4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2	0.6
합계	319	100.0

마. 주거 형태

응답자의 주거 형태는 거주시설(신고시설)인 경우가 27.6%(8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다음으로 주택(임대) 23.8%(76명), 아파트(임대) 14.1%(45명), 주택(자가) 11.6%(37명), 장기입원(정신요양병원) 9.1%(29명), 장기입원(일반요양병원) 7.2%(23명), 아파트(자가)와 ‘고용주가 제공한 숙소 또는 기숙사(주거지역 내)’ 각각 1.6%(5명) 순으로 나타났다. ‘비닐하우스 또는 컨테이너 박스, 선박 등 비 주거지역’ 0.9%(3명), 거주시설(미신고시설) 0.6%(2명), ‘고시원 또는 모텔 등의 숙박업소’ 0.3%(1명) 등 질이 떨어지는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응답자도 있었다. 또한 기타 상황으로 하숙을 하거나 절에 거주하는 경우, 위탁모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등도 확인되었다.

〈표 10〉 응답자의 주거 형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주택(자가)	37	11.6
주택(임대)	76	23.8
아파트(자가)	5	1.6
아파트(임대)	45	14.1
고용주가 제공한 숙소 또는 기숙사 (주거지역 내)	5	1.6
비닐하우스 또는 컨테이너 박스, 선박 등 비주거지역	3	0.9
고시원 또는 모텔 등의 숙박업소	1	0.3
거주시설(신고시설)	88	27.6
거주시설(미신고시설)	2	0.6
장기입원(일반요양병원)	23	7.2
장기입원(정신요양병원)	29	9.1
기타	4	1.3
합계	318	100.0



바. 급여관리자와의 관계

응답자와 급여관리자 간의 관계는 시설관련인이 38.6%(12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다음으로 ‘그 외 친인척’ 17.2%(55명), ‘그 외 지인’ 16.6%(53명), 형제와 자매 14.1%(45명), 활동지원사 3.4%(11명), 자녀 2.5%(8명), 장애인단체 관련인 1.3%(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배우자, 조부모, 손자·손녀 등도 일부 있었다.

〈표 11〉 급여관리자와의 관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부모	17	5.3
자녀	8	2.5
배우자	1	0.3
형제, 자매	45	14.1
조부모	1	0.3
손자·손녀	1	0.3
그 외 친인척	55	17.2
시설관련인	123	38.6
장애인단체 관련인	4	1.3
활동지원사	11	3.4
그 외 지인	53	16.6
합계	319	100.0

사. 급여관리자와의 동거 여부

급여관리자와의 동거 여부에서는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55.5%(177명)로 동거하고 있는 경우 44.5%(142명)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12〉 급여관리자와의 동거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예	142	44.5
아니오	177	55.5
합계	319	100.0

아. 급여관리자의 방문 빈도

급여관리자와의 동거 여부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응답자 중 급여관리자가 매일 방문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5.5%(76명)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매일은 아니지만 주 2회 이상’ 13.8%(23명), 주 1회 정도 13.2%(22명), 월 1회 정도 9.0%(15명), 월 2~3회 정도와 분기(계절이 바뀔 때) 1회 정도 각각 7.2%(12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의 오지 않는 경우도 4.2%(7명)가 확인되었다. 그 외 서술 답변에서는 전화로 연락하는 경우(2명)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1명)도 있었다.

〈표 13〉 급여관리자의 방문 빈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일	76	45.5
매일은 아니지만, 주 2회 이상	23	13.8
주 1회 정도	22	13.2
월 2~3회 정도	12	7.2
월 1회 정도	15	9.0
분기(계절이 바뀔 때) 1회 정도	12	7.2
거의 오지 않음	7	4.2
합계	167	100.0

자. 급여통장의 소유자

급여통장의 소유자는 급여관리자인 경우가 90.0%(28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본인인 경우 6.9%(22명), 기타 1.9%(6명), 본인과 급여관리자인 경우 0.9%(3명)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통장이 없는 경우 0.3%(1명)도 확인되었다. ‘기타’에는 급여관리자가 장애인단체 관련인이고 통장소유자가 친척인 경우 및 의사소통 불가능 등의 사유로 통장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표 14〉 급여통장의 소유자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본인	22	6.9
급여관리자	287	90.0
기타	6	1.9
본인+급여관리자	3	0.9
통장 없음	1	0.3
합계	319	100.0



차. 도장(급여통장의 도장)의 소유자

도장의 소유자는 급여관리자인 경우가 88.4%(28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본인인 경우 8.8%(28명), 기타 1.6%(5명), 본인과 급여관리자인 경우 0.6%(2명) 순으로 나타났고, 도장이 없는 경우도 0.6%(2명)가 확인되었다. ‘기타’에는 급여관리자가 장애인단체 관련인이고 도장소유자가 친척인 경우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 등의 사유로 도장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표 15〉 도장의 소유자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본인	28	8.8
급여관리자	282	88.4
기타	5	1.6
본인+급여관리자	2	0.6
도장 없음	2	0.6
합계	319	100.0

카. 지불카드의 소유자

지불카드의 소유자가 급여관리자인 경우가 76.1%(23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본인인 경우 9.1%(28명), 기타 4.2%(13명), ‘본인과 급여관리자’인 경우 및 ‘급여관리자와 기타’인 경우 각각 0.6%(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불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는 9.4%(29명)로 조사되었다. ‘기타’에는 급여관리자가 장애인단체 관련인이고 지불카드 소유자가 친척인 경우, 급여관리자가 장애인단체 관련인이고 지불카드 소유자가 급여관리자 또는 활동보조인인 경우, 급여관리자가 시설사무원이고 지불카드 소유자가 시설장인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의사소통 불가능 등의 사유로 지불카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표 16〉 지불카드의 소유자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본인	28	9.1
급여관리자	235	76.1
기타	13	4.2
본인+급여관리자	2	0.6
급여관리자+기타	2	0.6
지불카드 없음	29	9.4
합계	309	100.0

다. 용돈 주는 사람의 유무

조사참여자에게 용돈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63.2%(192명), 없는 경우는 36.8%(112명)로 나타났다.

〈표 17〉 용돈 주는 사람의 유무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없다	112	36.8
있다	192	63.2
합계	304	100.0

파. 조사참여자가 원하는 물품구매 여부

급여관리자가 조사참여자가 원하는 물품을 구매해 주는 경우는 86.3%(258명), 그렇지 않은 경우는 13.7%(41명)로 나타났다.

〈표 18〉 원하는 물품구매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예	258	86.3
아니요	41	13.7
합계	299	100.0

급여관리자가 장애인이 원하는 물품을 구매해 주지 않는 경우에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와 자신의 용돈으로 구매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8.8%(3명)이었다. ‘기타’로는 상세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함(17명), 필요한 것이 없어서 요구하지 않음(3명), 급여관리자가 무서워서 사달라고 하지 못함(1명), 급여관리자는 아니지만 활동지원사가 알아서 사다 줌(1명), 급여관리자와 병원 관계자가 상의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함(1명) 등이 조사되었다.

〈표 19〉 원하는 물품을 구매해 주지 않을 때 대처 방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매 포기	3	8.8
용돈으로 구매	3	8.8
기타	28	82.4
합계	34	100.0



하. 급여관리자의 지출보고 여부

급여관리자가 장애인에게 지출 보고를 하는 경우는 49.3%(149명), 지출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50.7%(153명)로 나타났다.

〈표 20〉 급여관리자의 지출보고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예	149	49.3
아니요	153	50.7
합계	302	100.0

급여관리자의 지출보고가 없는 이유로는 급여관리자가 지출에 대해서 가끔 알려주지만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2.7%(3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급여관리자가 지출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지만 당사자가 알고 싶지 않아서 보고 듣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18.2%(24명)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알려주지 않는 이유를 모름(7명), 특별한 이유 없이 알려주지 않음(4명), 장애인 당사자가 궁금해하지 않음(10명), 지출보고가 필요한 것인지 몰랐음(3명), 본인이 직접 지출하거나 급여관리자와 동행하기 때문(5명), 시설이나 병원에서 일괄 지출함(8명), 당사자를 제외하고 급여관리자와 병원측이 소통하여 지출함(2명), 그 외 장애인의 나이가 어리거나 대화가 불가능하여 이해하지 못함(18명) 등이 확인되었다.

〈표 21〉 지출보고가 없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알려주려 하는데 당사자가 알고 싶지 않아 설명을 거부하였음	24	18.2
가끔씩 알려주지만, 당사자가 별 관심이 없음	30	22.7
기타	78	59.1
합계	132	100.0

가. 급여관리자의 차용 여부

조사참여자의 급여 및 재산에 대한 급여관리자의 차용 여부에 관해서는 돈을 빌린 경우는 1.4%(4명), 빌리지 않은 경우는 98.6%(292명)로 나타났다.

〈표 22〉 급여관리자의 차용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예	4	1.4
아니오	292	98.6
합계	296	100

급여관리자가 당사자의 돈을 차용한 경우에, 빌려 간 돈이 1, 2만 원의 소액이며 환급해준다고 대답한 경우(1명), 빌려 간 돈의 액수가 10만 원이며 횟수는 2~3번 정도이고 바로 갚아주었다고 대답한 경우(1명), 빌려 간 돈의 액수가 500만 원 정도이며 차용증이 없고 6개월 정도 후 200만 원을 환급하고 3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1명) 등이 조사되었다.

겨. 급여관리자의 교체 희망 여부

급여관리자의 교체 희망 여부에 대해서, 조사참여자 9명 중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는 3.1%(9명), 교체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96.9%(284명)로 나타났다.

〈표 23〉 급여관리자의 교체 희망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예	9	3.1
아니오	284	96.9
합계	293	100

교체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급여관리자가 무섭게 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2명이었고, ‘기타’로는 본인 관리를 희망한 경우(2명), 주말이나 야간일 때 긴급한 지출이 어렵기 때 문이라고 응답한 경우(1명), 현 급여관리자가 치매 판정을 받은 상태인 경우(1명), 급여 관리자가 시설장으로 변경될 예정인 경우(1명) 등이 확인되었다.

〈표 24〉 급여관리자의 교체를 희망하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무섭게 해서	2	28.6
기타	5	71.4
합계	7	100.0



2. 학대 현황

가. 학대(의심) 여부

조사참여자 중 학대가 있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응답자는 33.6%(107명), 학대가 의심되지 않는 경우는 66.4%(211명)로 나타났다.

〈표 25〉 학대(의심)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유	107	33.6
무	211	66.4
합계	318	100.0

학대가 있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응답자 107명에 대하여 조사원이 기록한 서술내용을 토대로 학대 유형을 계량화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중복된 학대 유형 포함). 경제적 학대가 81.3%(87건)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다음으로 유기 및 방임이 16.8%(18건), 정서적 학대가 14.0%(15건), 신체적 학대 7.5%(8건)로 나타났고, 성적 학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6〉 학대 유형별 발생(의심) 현황

(단위 : 건, %)

구분	빈도	비율
신체적 학대	8	7.5
정서적 학대	15	14.0
경제적 학대	87	81.3
유기 및 방임	18	16.8
전체	128	119.6

급여관리자 유형, 통장 소유자, 도장 소유자, 용돈 주는 사람 유무, 원하는 물품구매 여부, 지출보고 여부, 급여관리자의 차용 여부, 급여관리자의 교체 필요 여부에 따른 학대(의심) 여부에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지불카드 소유자에 따른 응답자의 학대(의심)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1$). 지불카드를 본인이 소유할 경우에 학대(의심) 상황이 기대빈도보다 적게 나타났고, 지불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 학대(의심) 상황이 기대빈도보다 많았다. 이것은 지불카드를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급여지출에 지불카드가 사용되지 않아 지출내역에 관한 증빙이 미흡할 때, 장애인의 선택권이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을 소지가 있어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표 27〉 지불카드 소유자별 학대(의심) 여부의 교차분석 결과

(단위 : 건, %)

			지불카드 본인 소유	지불카드 타인 소유	지불카드 없음
학대여부	유	빈도	3	85	15
		비율	13.8	34.0	51.7
	무	빈도	25	165	14
		비율	86.2	66.0	48.3
전체		빈도	29	250	29
		비율	100.0	100.0	100.0

 $\chi^2=9.361$, ** $p < .01$

나.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신체, 물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에 폭행, 상해 또는 고통을 가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다.

학대가 의심되는 128건 중 신체적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건은 8건에 해당하였고,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28〉 신체적 학대의 주요 피해 의심 사례

구분	주요 피해 의심 사례
신체 폭행	- 조사참여자가 급여관리자와 동거하고 있음. 급여관리자의 폭력행사로 인해 조사참여자의 얼굴에 멍이 듦. 조사참여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접수됨. - 조사참여자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그룹홈에 입소함. - 조사참여자가 가출 후 노숙을 하다가 경찰서에 접수됨. 조사참여자는 부모(급여관리자, 파양처리 하였으나 부모와 아들 관계 유지)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가출했다고 진술함. 담당 공무원과 복지관 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하고 무혐의 처리함.
신체의 억압·감금·통제	-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지출 내역서 영수증 확인 중 손목 억제대 및 가슴 억제대를 구입한 내역이 확인됨. 조사참여자에게 상의 탈의를 하는 행동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고 급여관리자가 진술함. - 급여관리자가 생계를 위하여 출근할 경우, 주 출입구 및 대문에 잠금장치를 걸어둠. 급여관리자는 거주지 주변을 지나가는 외지인이 거주지 가정 내 집기류 등을 사용하고 방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신체적 학대는 급여관리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주로 나타났다. 신체를 폭행하는 경우와 신체를 억압 또는 감금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중에는 당사자는 급여관리자가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했으나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의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 경우도 있었다.

의심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급여관리자와 동거하는 피해장애인이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 접수된 사건이 있었고,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그룹홈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가출 후 노숙하던 피해장애인이 양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경우 등이 있었다. 둘째, 급여지출 내역에 손목과 가슴 억제대를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고, 급여관리자가 출근하면서 출입구를 밖에서 잠가서 장애인의 신체가 감금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다.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언어 또는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학대가 의심되는 128건 중 정서적 학대가 의심되는 건은 15건에 해당하였다. 조사원이 기록한 내용 중 정서적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주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9〉 정서적 학대의 주요 피해 의심 사례

구분	주요 피해 의심 사례
공포감을 주는,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조사참여자의 생활비(용돈)와 의류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급여관리자에게 생활비를 추가로 줄 것을 요청하도록 권유했으나 무서워서 말을 못 한다고 함. - 조사참여자는 급여관리자가 밥을 많이 먹으라고 해서 무섭다고 함. 급여관리자도 조사참여자에게 음식 때문에 나무라는 일이 많다고 진술함. - 조사참여자의 급여관리자는 지인이며, 동거하고 있음. 급여관리자의 다른 가족 중 일부가 조사참여자에게 TV를 끄라고 하거나 나가라는 말을 매일 한다고 함. 급여관리자가 집에 있을 때는 그러한 행동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함.
욕설·조롱·비난·무시하는 행위	- 급여관리자는 조사참여자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등 조사참여자에 대해서 조사자가 묻지 않은 불필요한 말을 지속적으로 함. - 급여관리자 부부는 대상자가 불쌍해서 계속 보살펴주고 있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모습을 보임. - 조사참여자가 시설에 거주할 당시 거주인들로부터 욕설 및 조롱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고함. - 조사자가 조사참여자와 상담할 당시, 급여관리자는 상담 도중 문을 세 번이나 열었고,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과 무슨 이야기가 되냐”며 조사자와 조사참여자 둘만의 대화를 매우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임. - 급여관리자가 조사참여자에게 “정신병이다, 머리가 아픈 사람이다”는 등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는 것으로 보임. - 급여관리자가 조사참여자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어서 거주시설에 보내고 싶다고 말함.

구분	주요 피해 의심 사례
선택권·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조사참여자가 휴대폰을 갖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급여관리자가 사주지 않음. - 조사참여자가 본인 스스로 통장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물품(주요 담배)을 구매하게 되었을 때, 급여관리자가 전화 와서 “돈을 어디 썼냐”고 지출내용 등을 확인한다고 함. - 한번은 조사참여자가 돈을 많이 썼기에 모(급여관리자)가 물어봤더니 직장 선생님에게 주기 위해서 초콜릿을 샀다고 함. 약 1만 5천 원 정도의 금액을 지출한 것에 대하여 모는 많이 썼다고 표현함. - 조사참여자가 라면을 먹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하며 “오늘만 해주세요”라는 말을 해도, 급여관리자는 “다른 건 다 돼도 라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강경하게 거절한다고 함. - 조사참여자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싶지만 급여관리자(형)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함. - 조사참여자가 혼자 살고 싶어 급여관리자에게 말했으나, 혼자 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함.

정서적 학대는 조사참여자가 급여관리자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는 경우, 피해장애인에 게 욕설이나 조롱 및 비난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구분되었다. 주요 의심 사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장애인이 급여관리자에게 생활비를 추가로 달라고 하기가 무섭다고 하거나 급여관리자가 피해장애인에게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무섭게 나무라는 사례도 있었고, 급여관리자의 다른 동거인이 급여관리자 부재 시 피해장애인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피해장애인에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 행동 통제가 안 된다” 등의 비난을 하는 경우, “대화가 되지 않는다, 정신병이다, 불쌍해서 보살펴 준다” 등의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거주시설의 다른 거주인들로부터 욕설과 조롱을 받은 경우 등이 조사되었다.

셋째, 피해장애인에게 휴대폰 구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피해장애인이 지출한 것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판단하는 경우, 원하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퇴원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피해장애인의 독립 가능성을 부정하는 경우 등도 확인되었다.

라. 경제적 학대

경제적 학대는 재산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를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사용·관리하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또는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이다.

학대가 의심되는 128건 중 경제적 학대가 의심되는 건은 87건에 해당하였다. 경제적 학대는 학대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원이 기록한 내용 중 경제적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주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0〉 경제적 학대의 주요 피해 의심 사례

구분	주요 피해 의심 사례
공적 급여 등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	- 조사참여자의 생계급여 및 장애인연금으로 급여관리자 가족의 생필품, 식대비, 주유비 등을 충당하고 있음. - 급여관리자와 동거하는 경우 생필품, 식자재 등을 수급비로 지출함. - 통장 확인 시 조사참여자와 관련 없는 지출내역이 드러남. - 급여관리자의 휴대폰 요금이 조사참여자의 통장에서 인출되고 있음. - 조사참여자의 거주지역이 아닌 급여관리자가 거주하고 있는 타 지역에서 거액의 가전제품을 구입함. - 거주시설의 이용료로 매월 50만 원이 지출되고 있음. - 거주시설 조사참여자 지출내역 상 용돈으로 인출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용돈이 아닌 프로그램 참여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음. - 그룹홈 공동계좌로 수급비 전액(수급비 통장 잔액 0원) 이체하여 관리 지출하고 있음. 공공후견인이 있다 하나 전화번호는 모른다고 함. 시설에서 후견인의 전화 번호를 모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소통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통장은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고 실제 급여관리자는 원장으로 보임. - 급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급여관리자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있음. 현금성 지출이 많고 흡소핑 등 급여관리자 본인 명의 카드 사용으로 할인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출하게 된다고 함. - 5백만 원이 급여관리자 통장으로 송금됨. 조사참여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함. 이후 2백만 원을 갚고 3백만 원은 아직 갚지 않음. - 딸의 핸드폰 미납요금(3백여만 원) 매월 10만 원이 급여통장에서 지출됨. 급여관리자는 센터(장애인 관련 단체)의 사회복지사이며, 체크카드만 관리하고 있음. - 조사참여자의 어금니가 빠지는 등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산 내역이 많고, 유류비 지출분도 많으며, 농약 등 조사참여자나 관련 없는 지출이 있음. - 급여관리자 본인의 용돈을 위해서 인출하기도 함. - 시설 입소비 명목으로 전액 인출됨. 입소비가 수급비와 연금을 합한 금액을 넘 으며, 장부에 잔고가 마이너스 금액으로 정리되어 있음. - 수급비 통장에서 1천만 원 출금 사실이 확인됨. 조사참여자가 고현 소방서 근처 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하여 보상금으로 처리하고 인출하였다고 함. 사고 처리 자료(합의금 지출내역, 서류 등)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계속 연락이 안 되고 있음. 투지했다는 사실을 알아냄. - 적금을 50만 원씩 넣는 통장이 있는데, 이 통장은 조사참여자가 폐지를 주워서 번 돈을 넣는다고 급여관리자가 진술함. 하지만 확인해 보니 1천만 원이 출금된 내역 이 있었고, 급여관리자는 질문에 계속 말을 바꾸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임.

구분	주요 피해 의심 사례
대출·보증 계약 체결, 명의로용으로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 조사참여자자와 급여관리자가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마련을 위해 3천만 원 전세 자금 대출을 하였고 그 당시 추가 비용이 더 들어 급여관리자가 조사참여자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함. - 급여관리자가 조사참여자 명의로 다단계를 하기 위하여 200만 원을 대출받음. - 조사참여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 후 요금을 체납함. - 모(급여관리자)가 아이(조사참여자)의 명의를 이용해 경제적 착취를 하려는 경향이 있음. 최종까지 아이 명의로 핸드폰을 만들고 요금을 체납하여 아이가 핸드폰을 만들 수 없었다고 함. - 오래전 조사참여자자가 고무공장에서 일할 때 그 회사 사장이 강제적으로 보증인이 되는 서류를 작성하게 한 적이 있음. 사장 소유의 차량구입 할부 대금 납부 계약 체결 시 조사참여자자를 보증인으로 신청함. 당사자는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함. - 조사참여자 명의로 차량을 아버지가 타고 다님. 2020년 차량 할부금 및 교통 범칙금을 미납함.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노동력 착취)	- 조사참여자자는 거주시설에 있으며 매일 거주인들의 옷을 세탁하는 일과 음식물쓰레기 비우는 일 등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함. - 조사참여자자가 시설 TV를 잘못 만져 TV 요금이 300만 원 정도 나온 적이 있다며, 급여관리자가 “어디서 돈 벌어서 갚을래?”라고 농담처럼 말했었다고 함. 본 사건을 이유로 일을 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함. - 조사참여자자는 절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발을 매는 일을 하여 다리와 손이 아프다고 함. 보수를 받은 적은 없었음. 보호사가 필요할 때마다 일을 시킨다고 함. - 조사참여자자는 급여관리자와 오랜 기간 동거 중이고 급여관리자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식당에 비자발적 참여 또는 동원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마을 주민들과 이웃들이 막걸리를 준다고 말을 하면서 조사참여자자에게 일을 시킨다고 함. 따로 수고비를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라고 함.
급여관리 소홀	- 급여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되고 영수증 첨부이 되지 않음. - 지자체에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관리자 점검에 따르면, 수급비에서 인출하여 사용된 내역에 대한 공적인 자료 제출(영수증 등)이 없고, 모두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었음. - 체크카드로 외식·생활용품 등을 구입함. 특이사항으로 현금 70만 원 정도를 매월 급여관리자가 인출하고 있음. 급여관리자에 의하면, 70만 원을 인출하는데 재래시장 식료품 구입, 식대, 주거비용, 생활 도움, 공과금 등 대상자가 사용하는 기본생활비 명목으로 받고 있다고 함(현금 사용 목록만 대략 작성하여 제출함). - 조사참여자자는 누가 돈을 관리하는지 모름. - 통장 재발급으로 인해 이전 달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



구분	주요 피해 의심 사례
	- 지출된 내역을 보지 못했으며, 고정된 지출 외의 나머지 수급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관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음. - 급여관리자가 통장, 도장, 체크카드를 관리하고 있고, 조사참여자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함. - 조사참여자는 통장 잔고, 급여 금액, 수급비 관리 내용, 급여관리자 등을 모르고 있음. - 그룹홈 공동계좌로 수급비를 모두 이체하여 관리하고 지출함. - 급여를 모두 현금 인출하여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임. - 조사참여자의 딸이 급여통장에서 목돈을 인출함. - 주민센터에서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함. - 급여관리자는 교회 목사이며, “통장도 도장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6월 말에 동사무소에 서류 제출한 후 두었는데 생각이 안 난다” 등의 말을 함. 확인차 복지 카드를 보여달라고 하자,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함. 10분 정도 경과 후 찾아와서 “아~ 이게 복지 카드인가?”하는 모습에서 실제 급여관리자는 다른 사람인 것으로 보임. 이야기 도중 나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전도사한테 전화한다고 하기도 함. 재조사가 필요함. - 급여통장에서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출 내역 확인이 불가함. 급여관리자가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과 지출 영수증 합계액에 차이가 크게 남. 매월 수급비 전액을 인출하여 생활비 60만 원 ~ 80만 원 정도를 조사참여자에게 줌. 그 외 지출처는 증빙되지 않음. - 체크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체크카드 사용을 안내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는 경우, 체크카드 보관을 누가 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급여관리자가 조사참여자의 지인이며, 급여관리자의 어머니가 조사참여자를 만나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고 함. 급여관리자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시간이 없다고 함. 4개월 치 생활비 1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함. - 의류구입비로 목돈이 지출됨(지출내역 상 사진 자료 없음). - 조사참여자 이름으로 적금을 넣었으나, 만기 후 사용내역을 알 수 없음. - 모두 적금한다고 답함. 얼마나 적금 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함.
과도한 보험 가입	- 조사참여자 보험 3건 가입(가입금액 약 30여만 원). 실태조사 후 급여관리자가 보험금액을 조정하여 보험 납부 금액을 줄임. 급여관리자는 보험설계사임. - 조사참여자 보험 4건 가입(가입금액이 30만 원을 넘음). - 보험 3개(상조보험, 화재보험, 암보험) 가입을 확인함. 보험지출금액은 약 13만 원임. - 조사참여자의 이름으로 보험 가입한 내역이 확인되어 보험증권이 첨부됨. 수급비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약관을 읽어 본 후 해제할 수 있으면 해지하도록 안내함.

경제적 학대의 내용은 공적 급여 등 재산 탈취, 대출·보증계약 체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채무 발생, 노동력 착취, 급여관리 소홀, 과도한 보험 가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지출에 있어서 장애인과 관련 없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생필품 및 식자재를 수급비에서 지출하는 경우, 시설 입소비, 가전제품 구입비 등 지출이 과도한 경우, 휴대폰 요금이나 용돈, 투자 등 급여관리자 사용의 목적으로 인출된 경우, 급여관리자가 차용한 경우, 지출내역과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 등이 있었다.

둘째, 급여관리자와 동거하는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추가 비용에 대하여 급여관리자가 장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장애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 후 요금을 체납한 경우, 조사참여자의 명의 차량을 급여관리자가 타고 다니고 차량 할부금과 교통 범칙금을 미납한 경우, 강제로 보증서를 서게 한 경우 등이 있었다.

셋째,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옷 세탁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의 일을 하고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이 고장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노동을 시키는 경우, 다리가 아픈 장애인에게 발일을 시키는 경우, 급여관리자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시키는 경우 등이 있었다.

넷째, 급여관리에 소홀하였다. 조사참여자에게 급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상세히 알리지 않아 장애인이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 체크카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한 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 명의로 적금을 넣고 만기 적금에 대한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다섯째, 장애인이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장애인 명의로 3~4건의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중에는 급여관리자가 보험설계사인 경우도 있었다.

1) 유기와 방임

유기 및 방임은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이다.

학대가 의심되는 128건 중 유기가 의심되는 건은 발견되지 않았고, 방임이 의심되는 건은 18건에 해당하였다. 조사원이 기록한 내용 중 방임의 피해가 의심되는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 방임의 주요 피해 의심 사례

구분	주요 피해 의심 사례
적절한 의식주의 미제공	- 조사참여자가 에어컨 없이 생활하거나 보일러 등의 온방 시설이 없이 지내고 있음. - 컨테이너 시설로, 냉난방 시설이 없고 공간이 좁음. -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 점심에 라면을 줌. - 남성 거주인 방은 초등학교 교실에 단열시공을 한 것으로 보였으나, 폐교된 학교라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얇은 유리 창문으로 인해 찬바람과 무더위가 그대로 들어옴. - 여성 거주인 방은 3평 정도의 방에 2층 침대 2개가 놓이니 공간이 거의 없음. - 조사참여자의 의복이 매우 부족함. 옷이 매우 낡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음. - 옷은 매우 낡은 상태임. 상의는 목이 늘어지고 색깔은 바래어, 버린 옷(걸레하기 직전 상태)을 주워 온 것으로 보임. 바지는 반바지였으나, 봄·가을용 반바지인데 두꺼운 모직 상태인 것 같은 반바지라 무척 더워 보임. - 조사원 방문 시 조사참여자는 더운 날씨에 긴 팔 옷을 입고 있었음. 옷 방에 급여관리자 부부 옷이 많았고, 조사참여자 옷은 서랍장 두 곳 정도였음. - 조사참여자와 급여관리자가 동거함. 급여관리자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조사참여자는 바닥에서 잔다고 함. - 조사참여자가 거주하는 곳은 교회 뒤편의 좁은 단칸방이었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안에 선풍기가 없었음. - 주택 한쪽에 방 한 칸과 욕실이 딸려 있는 방이 조사참여자의 방이었음. (현관 기준 오른쪽) 방에는 침대(병원 침대), TV, 멀티슈만 있었음. - 현재 조사참여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식당)의 생활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이른 시일 내로 거주지에 대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적절한 보건·의료의 미제공	- 조사참여자의 치아가 빠져 있으나 조치되지 않아 식사를 제대로 못 함. - 조사참여자의 치아 부식 상태가 심하여 급여관리자에게 물으니, 치과 치료를 하려고 해도 협조가 안 되어서 할 수 없다고 함. 건강검진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함. 병원 진료하는 것이 어려워 병원에 갈 수 없다고 함. - 멀티슈 사용방식(식당 날개 멀티슈를 대량 구입하여 일일이 봉지를 뜯은 후 플라스틱 통에 넣어 사용)이 비위생적임. - 집안 위생 상태 및 정리상태가 좋지 않음(곰팡이, 누수 등). -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피복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잦은 외출로 피부가 많이 탔으며, 위생지도가 필요해 보였음.

구분	주요 피해 의심 사례
	- 방에 별도의 물품이 많지 않고 조사참여자가 문을 여닫기가 어려워 방치한 결과, 방안에 파리가 많았음. - 피복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손톱 관리가 되지 않음. - 조사참여자가 소금물로 가글을 자주 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용한다는 컵에 잔여 이물질 등이 남아 있어 위생 상태가 상당히 불량함.
일상적 돌봄의 부족	- 조사참여자는 하루종일 TV만 보며 지내고 있음. TV는 화면이 반 이상 나오지 않는 고장 상태임. - 급여관리자가 멀리 거주하고 있음. 일상생활 관리를 못 해주는 것으로 보임. - 급여관리를 부모가 한다고 하였는데, 어머니의 나이가 95세, 아버지는 102세로 실질적으로 급여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듦. - 손과 팔에 장애가 있었으나 힘들지만 걸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활동지원사도 없이 목사(급여관리자)의 도움으로 교회(2층)에서 생활함. - 활동지원사가 월 120시간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불만이 있다고 함. - 조사참여자가 고령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니, 외부 다른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이 싫다고 함.

방임 피해 사례는 적절한 의식주의 미제공, 적절한 보건·의료의 미제공, 그리고 일상적 돌봄의 부족으로 구분되었다. 의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장애인이 냉난방이 되지 않는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중에는 컨테이너 형태의 그룹홈도 있었다. 장애인에게 라면을 자주 제공하는 등 식사 제공도 미흡하였다. 그리고 급여관리자의 의류에 비해 장애인의 의복이 훨씬 부족하거나 걸레로 써야 할 정도로 낡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경우, 협소한 공간에 여러 명이 생활하는 경우, 편의시설 및 용품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편한 잠자리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둘째, 치아가 빠져 있으나 의료적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 소변이 묻은 의복이 방치되어 있고 집안에 누수로 인한 곰팡이가 있거나 비위생적으로 물티슈를 사용하는 경우, 파리나 이물질이 있는 컵 등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 개인위생 관리가 미흡한 경우 등이 조사되었다.

셋째, 급여관리자의 거주지가 멀어서 일상생활 관리가 되지 않거나 급여관리자가 고령이어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었고, 장애인이 하루 종일 반쯤 고장 난 TV만 보며 지내도록 방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적절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일상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례들도 확인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1. 주요 분석 결과

본 조사는 급여관리자가 지정된 발달·뇌병변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최종 분석 대상은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급여관리자가 지정된 발달·뇌병변 장애인 319명이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 조사

응답자의 주거 형태는 거주시설(신고시설)인 경우가 27.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다음으로 주택(임대) 23.8%, 아파트(임대) 14.1%, 주택(자가) 11.6%, 장기입원(정신요양병원) 9.1%, 장기입원(일반요양병원) 7.2%, 아파트(자가)와 ‘고용주가 제공한 숙소 또는 기숙사(주거지역 내)’ 각각 1.6% 순으로 나타났다. ‘비닐하우스 또는 컨테이너 박스, 선박 등 비 주거지역’ 0.9%, 거주시설(미신고시설) 0.6%, ‘고시원 또는 모텔 등의 숙박업소’ 0.3% 등 질이 떨어지는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응답자도 있었다. 또한 기타 상황으로 하숙을 하거나 절에 거주하는 경우, 위탁모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등도 확인되었다.

응답자와 급여관리자 간의 관계는 시설관련인이 38.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다음으로 ‘그 외 친인척’ 17.2%, ‘그 외 지인’ 16.6%, 형제와 자매 14.1%, 활동지원사 3.4%, 자녀 2.5%, 장애인단체 관련인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배우자, 조부모, 손자·손녀 등도 일부 있었다.

급여관리자와의 동거 여부에서는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55.5%로 동거하고 있는 경우 44.5%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급여관리자와의 동거 여부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응답자 중 급여관리자가 매일 방문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5.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매일은 아니지만 주 2회 이상’ 13.8%, 주 1회 정도 13.2%, 월 1회 정도 9.0%, 월 2~3회 정도와 분기(계절이 바뀔 때) 1회 정도 각각 7.2% 순으로 나타났다. 거의 오지 않는 경우도 4.2%가 확인되었다. 그 외 서술 답변에서는 전화로 연락하는 경우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급여통장의 소유자는 급여관리자인 경우가 9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본인인 경우 6.9%, 기타 1.9%, 본인과 급여관리자인 경우 0.9%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통장이 없는 경우 0.3%도 확인되었다. ‘기타’에는 급여관리자가 장애인단체 관련인이고 통장소유자가 친척인 경우 및 의사소통 불가능 등의 사유로 통장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도장의 소유자는 급여관리자인 경우가 8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본인인 경우 8.8%, 기타 1.6%, 본인과 급여관리자인 경우 0.6% 순으로 나타났다. 도장이 없는 경우도 0.6%가 확인되었다. ‘기타’에는 급여관리자가 장애인단체 관련인이고 도장소유자가 친척인 경우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 등의 사유로 도장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지불카드의 소유자가 급여관리자인 경우가 7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본인인 경우 9.1%, 기타 4.2%, ‘본인과 급여관리자’인 경우 및 ‘급여관리자와 기타’인 경우 각각 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불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는 9.4%로 조사되었다. ‘기타’에는 급여관리자가 장애인단체 관련인이고 지불카드 소유자가 친척인 경우, 급여관리자가 장애인단체 관련인이고 지불카드 소유자가 급여관리자 또는 활동보조인인 경우, 급여관리자가 시설사무원이고 지불카드 소유자가 시설장인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의사소통 불가능 등의 사유로 지불카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응답자에게 용돈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63.2%, 없는 경우는 36.8%로 나타났다.

급여관리자가 장애인이 원하는 물품을 구매해 주는 경우는 86.3%, 그렇지 않은 경우는 13.7%로 나타났다. 급여관리자가 장애인이 원하는 물품을 구매해 주지 않는 경우에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와 자신의 용돈으로 구매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8.8%이었다. ‘기타’로는 상세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필요한 것이 없어서 요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급여관리자가 무서워서 사달라고 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 급여관리자는 아니지만 활동지원사가 알아서 사준다고 응답한 경우, 급여관리자와 병원 관계자가 상의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준다고 응답한 경우 등이 조사되었다.

급여관리자가 장애인에게 지출 보고를 하는 경우는 49.3%, 지출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50.7%로 나타났다. 급여관리자가 장애인에게 지출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급여관리자가 지출에 대해서 가끔 알려주지만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급여관리자가 지출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지만 당사자가 알고 싶지 않아서 보고 듣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18.2%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알려주지 않는 이유를 모름, 특별한 이유 없이 알려주지 않음, 장애인 당사자가 궁금해하지 않음, 지출보고가 필요한 것인지 몰랐음, 본인이 직접 지출하거나 급여관리자와 동행하기 때문, 시설이나 병원에서 일괄 지출함, 당사자를 제외하고 급여관리자와 병원이 소통하여 지출함, 그 외 장애인의 나이가 어리거나 대화가 불가능하여 이해하지 못함 등이 확인되었다.

당사자에 대한 급여관리자의 차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돈을 빌린 경우는 1.4%이고, 빌리지 않은 경우는 98.6%로 나타났다. 급여관리자가 당사자의 돈을 차용한 경우에, 빌려 간 돈이 1, 2만 원의 소액이며 환급해준다고 대답한 경우, 빌려 간 돈의 액수



가 10만 원이며 횡수는 2~3번 정도이고 바로 갚아주었다고 대답한 경우, 빌려 간 돈의 액수가 500만 원 정도이며 차용증이 없고 6개월 정도 후 200만 원을 환급하고 3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등이 조사되었다.

급여관리자의 교체 희망 여부에 대해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는 3.1%, 교체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96.9%로 나타났다. 교체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급여관리자가 무섭게 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조사되었다. ‘기타’로는 본인 관리를 희망한 경우, 주말이나 야간일 때 긴급한 지출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 현 급여관리자가 치매 관정을 받은 상태인 경우, 급여관리자가 시설장으로 변경될 예정인 경우 등이 확인되었다.

나. 학대 현황

조사참여자 중 학대가 의심되는 응답자는 33.6%, 학대가 의심되지 않는 경우는 66.4%로 나타났다. 학대가 의심되는 응답자에 대하여 조사원이 기록한 서술내용을 토대로 학대 유형을 계량화한 결과(중복된 학대 유형 포함), 경제적 학대가 81.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다음으로 유기 및 방임이 16.8%, 정서적 학대가 14.0%, 신체적 학대 7.5%로 나타났고, 성적 학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응답자의 학대(의심) 여부는 지불카드 소유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지불카드를 본인이 소유할 경우에 학대(의심) 상황이 기대빈도보다 적게 나타났고, 지불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 학대(의심) 상황이 기대빈도보다 많았다.

다. 학대 유형에 따른 주요 사례와 특징

첫째, 신체적 학대는 급여관리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주로 나타났으며, 신체를 폭행하는 경우와 신체를 억압 또는 감금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중에는 당사자는 급여관리자가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했으나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의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 경우도 있었다. 의심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면, 피해장애인이 급여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경우, 부모로부터의 폭행 이후 그룹홈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피해장애인이 양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경우 등 직접적인 신체 학대가 있었거나 학대가 의심되었다. 또한 손목과 가슴 억제대를 구입한 지출 내역이 확인된 경우, 급여관리자가 출근하면서 출입구를 밖에서 잠가서 장애인의 신체가 감금되는 경우 등 장애인의 신체에 대한 억압·감금 의심 상황이 확인되었다. 급여관리자가 장애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장애인에게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려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장애인의 신체를 억압할 수 있다는 관점을 급여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정서적 학대는 피해장애인이 급여관리자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는 경우, 피해장애인에게 욕설이나 조롱 및 비난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는 경우로 구분되었다. 주요 의심 사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급여관리자가 무서워서 추가 생활비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관리자가 장애인의 식사와 관련하여 나무라는 경우, 급여관리자의 동거인이 장애인을 협박하는 경우 등 장애인이 공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 장애인의 성 문제나 행동을 비난하거나 장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장애인을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상황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휴대폰, 음식, 퇴원 등 장애인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의 지출에 개입하는 경우, 장애인의 독립 가능성을 부정하는 경우 등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이 침해되었다.

정서적 학대는 급여관리자와 동거하는 경우에 다수 발생하였고, 대부분 장애인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장애인의 선택을 무시하는 행위였다. 이는 급여관리자와 동거하는 경우에 급여관리자가 보호자의 역할도 하게 되어 쉽게 장애인을 나무라거나 결정권을 통제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학대의 내용은 공적 급여 등 재산 탈취, 대출·보증계약 체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채무 발생, 노동력 착취, 급여관리 소홀, 과도한 보험 가입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여관리자와 동거하는 경우에 생활비를 수급비에서 지출하는 경우, 시설 입소비가 과도한 경우,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입한 경우, 급여관리자의 사용 목적으로 지출하거나 차용한 경우, 지출내역과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 등 공적 급여 등 재산이 탈취되었다. 급여관리자와 동거하는 주택의 전세자금을 대출받거나 추가 비용을 장애인이 급여관리자로부터 빌리도록 한 경우, 장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요금을 채납한 경우,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급여관리자가 타고 다니면서 차량할부금과 교통 범칙금을 채납한 경우, 보증을 서게 한 경우 등 대출 및 보증계약 체결과 명의도용도 확인되었다. 또한 거주시설 장애인이 보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시설 일을 하는 경우,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거나 급여관리자 사업장의 일을 시키는 경우 등 노동력 착취가 있었다. 급여관리 사항을 장애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현금을 사용하고 영수증 첨부을 하지 않는 경우, 체크카드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 명의로 적금 가입 후 만기 적금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급여관리도 소홀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명의로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경우 등이 있었다.

경제적 학대는 학대 유형 중 건수가 가장 많고, 그 내용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지출내역 기록과 증빙의 누락, 원칙적으로 체크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등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급여관리 방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다른 형태의 경제적 학대 및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과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노동력 착취는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조사 참여자가 대부분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대출, 할부금, 휴대폰 개통 등에 본인 명의가 사용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경제적 학대에 더욱 쉽게 노출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방임 피해 사례는 적절한 의식주의 미제공, 적절한 보건·의료의 미제공, 그리고 일상적 돌봄의 부족으로 구분되었다. 의심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거주공간에 냉난방이 되지 않거나, 컨테이너와 같은, 설비가 열악한 장소나 협소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식사 제공이 미흡한 경우, 의복이 계절에 맞지 않고 가짓수가 부족한 경우, 편의시설 및 생활용품이 부족한 경우, 편한 잠자리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 의식주 제공이 부적절한 상황이 확인되었다. 또한 의료적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 의복 상태가 불결한 경우, 곰팡이나 파리가 방치된 경우, 주방용기가 불결한 경우, 개인위생 관리가 미흡한 경우 등 보건·의료 상태가 부적절한 상황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급여관리자와의 물리적 거리가 멀거나 급여관리자가 고령이어서 급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장애인이 하루종일 방치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정도가 미흡한 경우 등 일상적인 돌봄이 부족한 상황도 있었다.

급여관리자가 장애인의 생계급여를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의식주와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소홀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방치하는 것은 종종 장애인의 신체 건강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필요한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

2. 제언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의 적극적인 급여관리 점검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경기도(2018)의 복지급여 관리 실태조사에서 지자체가 급여관리자 지정과 동시에 사회복지전산시스템(행복e음)에 등록 후 반기별로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6개 시·군 3,123명을 사회복지전산시스템에 미등록하는 등 급여 전산 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인천 연수구(2019)의 급여관리에 대한 지자체 감사에서는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대상자임에도 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사례, 점검은 하였으나 부적정한 내용이 있음에도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지 않은 사례, 내용상 충분히 복지급여의 부정 사용(횡령)이 확인됨에도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없이 급여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급여관리자와 급여관리방식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점검을 통해서 급여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부적절한 관리의 적발 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수행하여 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관계인인 급여관리자에 의한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급여관리 점검이 지침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점검 조사 기간에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인력을 추가로 지원하여 지자체의 점검 역량을 향상시키고 업무부담을 감소시키는 조치도 필요하다.

둘째, 급여관리 점검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는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인 경우 — 직계존속의 범위는 대상자의 부모 및 (외)조부모 —와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민법」상 3촌 이내 친족(직계비속 포함)이거나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가정의 위탁부모로 급여의 착취·유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한 경우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는 이들 모두가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장애인과 동거하는 가족 및 친인척 급여관리자에 의한 학대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현 지침의 점검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후견인이 지정된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학대 의심 사례가 확인되었다. 공공후견인이 있으나 시설에서는 전화번호조차 모르고 있어 급여관리자와 후견인 간의 소통이 부재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는 의사무능력자인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된 후견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급여관리자에 의해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견인이 지정된 장애인의 경우에도 급여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급여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확대가 필요하다.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는 친족 또는 시설·의료기관 관계자 외의 사람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되어 수급자의 급여를 관리하는 경우에 적정한 급여관리를 격려하고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인센티브의 제공을 권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경기도(2018)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31개 시·군 중 실제로 인센티브를 실시한 곳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급여관리자에 대한 지도 점검뿐만 아니라 급여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는 급여관리자에게 자원봉사 시간 인정, 기관 단체장 표창장 수여,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 등 지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면,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향상되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급여관리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원칙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지불카드를 소유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 본 조사에서 장애인 본인이 지불카드를 소유한 경우에 학대가 의미 있게 낮게 나타났고, 지불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 학대가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다. 본인이 지불카드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장애인의 인지 하에 지출이 이루어지게 되고 지출 후 지출내역 보고가 용이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반하는 지출이 감소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병원이나 시설에서 급여를 일괄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출 전 본인의 동의와 지출 후 보고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본 조사에 의하면,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거주 장애인과 장기입원 장애인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급여관리에 장애인 당사자가 소외되어 있었다. 즉, 기관에서 판단하여 필요한 물품을 일괄 주문하거나, 기관과 급여관리자가 지



정된 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인을 제외하고 기관과 급여관리자만이 소통하여 지출하고 장애인에게 지출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상황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급여관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급여관리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급여관리자에 대해 지출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점검해야 한다.

다섯째, 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학대 조사 시 주의가 필요하다. 급여관리자에 의한 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그것이 본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급여관리자에 대한 학대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 현재 급여관리자 지정 시 동의서 작성, 지정서 교부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급여관리 사실과 책임의 인지를 유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급여관리자 지정 시 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급여관리자 지정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급여관리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호소하거나 폭행에 대한 장애인의 진술이 있을 시, 조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진술 신빙성이 부당하게 훼손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본 조사에서 신체적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 중, 장애인은 급여관리자에 의한 폭행을 진술하였지만 조사 후 혐의없음으로 판정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에서 의사무능력자인 중증 발달·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 그들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이 급여관리자의 진술에 비해 과도하게 결핍되어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역할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조사참여자가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학대에 쉽게 노출되거나 점검 시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대 피해 여부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을 둘러싼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급여관리 상황 및 학대 상황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찰을 해야 하고, 지자체의 점검 시기 외에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한 관찰이 상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다양한 자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인 욕구 파악과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급여에 대한 선택과 통제를 보장해야 한다. 중증 장애인이 고립되고 방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는 것 또한 필요하다.

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함께 하여 주신 모든 실태조사원 및 경상남도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써, 경상남도 및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의 공식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경기도. 201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경기도.
-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 2021년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1인 발달·뇌병변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김동기, 박수지. 2013. “재가서비스의 안전성(Safety)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9(11) : 155-172.
- 김재호. 2022. 발달장애인 경제적 착취 피해 동향 분석 : 준사기 피해 사건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수희. 2016.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0) : 546-555.
- 보건복지부.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서동명, 권금주, 김강원, 김기원, 김용혁, 서동운, 송남영, 오욱찬, 이인선, 이현민, 허주현, 임은진. 2016. 장애인 학대 지표 및 실태조사 도구 개발 연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이동석, 김용진, 이호선, 전근배, 이건희, 도여옥, 최지혜. 2021.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방안. 보건복지부.
- 이동석, 김주경, 박수인, 조문순, 조주희, 서보훈, 허주현. 2014. 장애와 학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인천 연수구. 2019. 복지급여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 인천 연수구.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 2020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부록 1]

2022년도 경상남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사표 (급여관리 조사표)

* 이 조사표는 조사참여에 동의한 장애인의 급여관리 현황에 관한 조사표로서, 담당공무원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일반 현황	
※. 코드번호 (이 칸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지역 (시·군) + 장애유형 1자리 + 넘버 3자리 + 관계	- - -
1. 장애인명		
2. 생년월일		
3.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4. 주소		
5. 연락처		
6. 급여관리자명		
7. 급여관리자의 관계	① 부모 ② 자녀 ③ 형제·자매 ④ 조부모 ⑤ 손자손녀 ⑥ 그외 친인척 ⑦ 시설관련인 ⑧ 장애인단체관련인 ⑨ 고용주 ⑩ 활동지원사 ⑪ 친구 ⑫ 그외 지인 _____	
8. 동거 여부	① 예 -급여관리자와 한 집에서 거주 ② 아니오 -급여관리자와 따로 거주	
9. 급여관리자 거주지역	※ 장애인이 살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형태에 체크 ① 같은 건물 다른 층 ② 인근지역 ③ 타 읍면동 ④ 타 시군(명 : _____) ⑤ 타 광역시도(명 : _____)	
10.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기간	_____ 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_____ 년)	

조 사 일 : _____ 년 월 일

조사원(담당공무원)명 : _____

조사원 소속 : _____

II	급여관리 현황
<이 문항들은 장애인의 답변과 대조하여 '공적급여가 해당 장애인에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참고할 내용으로서, 급여관리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1년 동안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출받은 해당장애인의 급여 사용내역을 참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영수증 처리	① 모든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 잘 첨부되어 있음. ② 비교적 영수증 첨부이 되어 있는 편임. ③ 영수증 처리가 미흡함. ④ 영수증 처리가 거의 되지 않음.
12. 급여사용방법	① 대부분 카드 사용 ② 카드와 현금의 복합 사용 ③ 대부분 현금 사용 ④ 알 수 없음
13. 현금의 주 사용처	※ 최근 1년 이내 현금을 사용한 경우, 주로 어떤 항목으로 지출되고 있는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필품, 식대, 피복비, 교통비, 종교활동비, 특정 타인에게 줬은 이체, 출금이 잦으나 사용처는 알 수 없음 등) - - - - - -
14. 대출 상환 내역	※ 최근 1년 이내, 대출(카드대출, 개인대출 등) 상환을 위해 사용한 지출내역이 있다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5. 급여관리 보고 수준	※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한 보고방식의 이행 정도, 보고기한 준수 등을 기준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협조적 ② 어느 정도 협조적 ③ 비협조적 ④ 매우 비협조적 *이유 : _____



Ⅲ	학대 의심사례
	※ 해당 장애인에 대하여 경제적 착취를 포함한 학대가 의심되는 문제가 있다면,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몇 차례나 의심되는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십시오. ※ 확보한 증거물이 있다면, 이 조사표에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사기관 :  경상남도 GYEONGNAM,  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22년도 경상남도 장애인 방문조사표

I 일반 현황	
※ 코드번호 (이 칸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지역 (시·군) + 장애유형 1자리 + 넘버 3자리 - -
1. 성명	
2. 출생년월일 (확인가능 시)	(음력 / 양력) 년 월 일
3.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4. 주소	
5. 연락처	
6. 장애 유형	① 지적장애 ② 자폐성장애 ③ 뇌병변장애 ※ 중복장애: _____
7. 장애 정도	① 심한 장애(중증) ②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8. 급여관리자	※ 급여관리자 모두 기재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상기 <2.성명>의 본인은 「경상남도과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2022년 경상남도 장애인 방문조사 및 급여관리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급여관련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활용에도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이 제공한 개인정보는 급여관리 및 생활실태 확인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조사원 : _____(으)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

2022년 월 일

조사참여자 성명 : _____ (서명)

(조사참여자의 응답이 불가능할 시) 대리응답자의 관계 및 성명 : _____ (서명)



※ 확인할 사항	
9. 급여관리자 관계	① 부모 ② 자녀 ③ 형제·자매 ④ 조부모 ⑤ 손자손녀 ⑥ 그외 친인척 ⑦ 시설관련인 ⑧ 장애인단체관련인 ⑨ 고용주 ⑩ 활동지원사 ⑪ 친구 ⑫ 그외 지인 _____
10. 주거형태	① 주택 [□자가 / □임대] 임대인과의 관계 : _____ ② 아파트 [□자가 / □임대] 임대인과의 관계 : _____ ③ 고용주가 제공한 숙소 또는 기숙사 (주거지역 내) ④ 비닐하우스 또는 컨테이너박스, 선박 등 비주거지역 ⑤ 고시원 또는 모텔 등의 숙박업소 ⑥ 거주시설 (□신고시설 / □미신고시설) ⑦ 장기입원 (□일반요양병원 / □정신요양병원) ⑧ 거주지 불명확 _____ ⑨ 확인 어려움 _____
11. 동거여부	① 예 -급여관리자와 같이 생활(☞문항13로 이동) ② 아니오 -급여관리자와 따로 생활
12. 방문정도	① 매일 ② 매일은 아니지만, 주 2회 이상 ③ 주 1회 정도 ④ 월 2~3회 정도 ⑤ 월 1회 정도 ⑥ 분기(계절이 바뀔 때) 1회 정도 ⑦ 거의 오지 않음
13. 통장의 소유자	① 본인 ② 급여관리자 ③ 기타 *기타에 체크한 경우, 소유자명 : _____ (관계)
14. 도장의 소유자	① 본인 ② 급여관리자 ③ 기타 *기타에 체크한 경우, 소유자명 : _____ (관계)
15. 지불카드의 소유자	※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① 본인 ② 급여관리자 ③ 기타 *기타에 체크한 경우, 소유자명 : _____ (관계)
16. 용돈 주는 사람	① 있음 (관계 : _____) ② 없음 *있다면, 매월 용돈 액수 : _____

17. 원하는 물품 구매	<급여관리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달라고, 또는 사줬다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① 예(☞문항18로 이동) ② 아니오
17-1.	<필요한 물품을 사달라고 편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① 구매 포기 ② 용돈으로 구매 ③ 다른 사람에게 얻어서(혹은 빌려서) 사용 ④ 기타 : _____
18. 지출 보고	<급여관리자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영수증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는지> ① 예(☞문항19로 이동) ② 아니오
18-1.	<급여관리자가 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는 이유> ① 알려주려 하는데 내가 알고 싶지 않아 설명거부하였음. ② 가끔씩 알려주지만, 내가 별 관심 없음. ③ 어디에 썼는지 물어봤지만, 말해주지 않아 모르겠음. ④ 기타 : _____
19. 차용 여부	<급여관리자가 내 돈을 빌려간 적이 있는지> ① 예 ② 아니오(☞문항20로 이동)
19-1.	<급여관리자가 내 돈을 빌려간 적이 있다면> ① 빌려간 돈의 액수 : _____ ② 빌려간 시기 : _____ ③ 차용증 작성 여부 : _____ ④ 환급 여부 : _____
20. 교체 필요 여부	<현재 급여관리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은지> ① 예 ② 아니오(☞II로 이동)
20-1.	<현재 급여관리자를 바꾸고 싶은 이유> ① 친절하지 않아서 ② 나에게 허락받지 않고 내 돈을 써서(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③ 생필품(예. 쌀, 반찬, 옷, 신발 등)을 사 주지 않아서 ④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⑤ 무섭게 해서 ⑥ 때려서 ⑦ 기타 : _____



II 학대 등 인권침해 확인사항	
1. 정서적 학대	
용어 설명	‘정서적 학대’란 언어 또는 비언어적 행동으로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장애인에게 참기 어려운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예시] • (급여관리자가) ‘말을 잘 들으라’면서 무섭게 위협하거나 협박을 한 적이 있다. • ‘정신병원이나 시설로 보내버리겠다’면서 위협하거나 협박을 한 적이 있다. • 나에게 여러 번 욕설을 하거나 놀리거나(조롱), 장애비하 발언(병신 등)을 한 적이 있다. • 무릎을 꿇고 빌게 하거나 나에게 침을 뱉은 적이 있다. • (주말이나 개인 시간 등) 하고 싶은 활동을 못하게 하고 괴롭힌 적이 있다.	
조사 내용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몇 차례나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 *확보된 증거물은 공무원에게 전달(사진, 병원기록, 증언자, 통화내역 등)하고, 증거물 목록은 ‘조사내용 작성칸’ 하단에 기록

2.	신체적 학대
용어 설명	‘신체적 학대’란 신체에 대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여 고통을 주거나 신체를 손상시키는 등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조사내용	[예시] • (급여관리자가) 최근 신체의 일부(손, 발 등)나 물건 등으로 때린 적이 있다. • 최근 신체의 일부(손, 발 등)나 물건 등으로 맞아 상처가 난 적이 있다. • 평소 자주 밀치거나 꼬집는 등 괴롭힌 적이 있다. • 내 몸을 강제로 억압하거나 문을 잠그거나(감금), 출입통제 등을 하였다. • 난방을 못하게 해서 겨울에 동상이 걸린 적이 있다. • 다른 사람은 밥을 먹는데 나에게만 별이라면서 밥도 안 주거나 못 먹게 한 적이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몇 차례나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 *확보된 증거물은 공무원에게 전달(사진, 병원기록, 증언자, 통화내역 등)하고, 증거물 목록은 ‘조사내용 작성칸’ 하단에 기록



3.	성적 학대
용어 설명	‘성적 학대’란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성매매 등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여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하며, 성별과는 관계가 없다. ① 성희롱 :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거나 성적 동영상, 사진 등을 보여주며 부끄럽게 만드는 것, 또는 동영상, 사진과 동일한 포즈를 취하며 불쾌하게 하는 등의 성적 놀림 ② 성추행 : 강제, 혹은 유인하여 몸을 만지는 행동 ③ 성폭력 : 강제, 혹은 유인하여 성관계 등을 하는 것 ④ 성매매 : 평소 갖고 싶었던 선물이나 돈으로 유혹하여 성관계 등을 하는 것
	[예시] • ① (급여관리자가) 성희롱을 하여 나를 성적으로 부끄럽게 만든 적이 있다. • ② 성추행 : 자꾸 가슴이나 목덜미 엉덩이, 다리 등의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갑자기 자신의 신체부위를 내 몸에 바짝 댔던 적이 있다. • ③ 성폭력 : 성적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며 똑같이 해보자고 한 적이 있다. • ③ 성폭력 :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내 몸에 자신의 몸 또는 뭔가 이상한 것을 집어넣으려거나, 집어넣은 적이 있다. • ④ 성매매 : 다른 사람에게 용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게 한 적이 있다. • 촬영 등 : 나에게 옷을 벗게 하거나 성관계를 하며, 휴대폰이나 사진기 등으로 나를 촬영한 적이 있다.
조사내용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몇 차례나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 *확보된 증거물은 공무원에게 전달(사진, 병원기록, 증언자, 통화내역 등)하고, 증거물 목록은 ‘조사내용 작성칸’ 하단에 기록

4.	경제적 학대
용어 설명	‘경제적 학대’란 재산(공적 급여, 금전, 부동산, 기타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 등)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노동착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어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예시] • (급여관리자가) 나에게 들어오는 기초수급비나 장애연금 등을 마음대로 사용한 적이 있다. • 내 통장과 도장이나 카드를 허락없이 가져가서 마음대로 사용한 적이 있다. • (강제로 혹은 속여서) 내 집이나 가게, 돈을 그 사람 명의로 바꾸어 버렸다. • 내 명의로 장애인용 차를 사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보호자차량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보호자가 사용하는지도 확인) • (명의를 도용하여) 원하지 않는 빚(채무)을 지게 하였다. • 내가 잘 모르는 어떤 계약서, 각서에 서명을 하라고 시킨 적이 있다. • 내가 가입한 보험을 강제로 해약해서 해약금을 들고 가거나 모아둔 돈을 가져간 적이 있다. • 내가 알지 못하는 돈을 갚으라는 문자나 전화, 우편이 온다.
조사 내용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몇 차례나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 *확보된 증거물은 공무원에게 전달(사진, 병원기록, 증언자, 통화내역 등)하고, 증거물 목록은 ‘조사내용 작성칸’ 하단에 기록



5. 유거나 방입	
용어 설명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친권자, 후견인, 시설장 등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는 것을 ‘유기’,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것을 ‘방입’이라고 한다.
[예시] • (급여관리자가) 적절한 입을 것, 먹을 것, 잘 곳 마련을 위해 내 돈을 쓰지 못하게 한다. • 내가 다쳤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약을 사 주지 않는다. • 우리 지역에 공동·민간 서비스를 알려주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 활동지원사의 보조가 필요하지만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조사내용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몇 차례나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 *확보된 증거물은 공무원에게 전달(사진, 병원기록, 증언자, 통화내역 등)하고, 증거물 목록은 ‘조사내용 작성칸’ 하단에 기록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별 관련 사례 등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초생활수급비 관련 사례

김 태 훈 /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부산권익옹호기관)은 2017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매년 300~400여건의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접수(일반상담 포함)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전국에서 장애인 인구가 경기도, 서울시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광역시이며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또한 인구에 비례하며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권익옹호기관의 학대 신고 접수 특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방임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장애인 70%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으로 취약성이 가장 높다고 해석됩니다.

피해자 연령대에서도 20대~40대의 비율이 높게 보이며 이는 지역사회 활동이 많은 발달장애인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19년 ~ 2021년까지 부산권익옹호기관 학대 사건 접수 현황과 판정 내용입니다.

2019년 ~ 2021년 신고 접수 현황

연도	구분	일반사례	학대의심사례	합계
2019년	빈도	175	170	345
	비율	50.7%	49.3%	100%
2020년	빈도	149	162	311
	비율	47.9%	52.1%	100%
2021년	빈도	216	170	386
	비율	56%	44%	100%
계		540(51.8%)	502(48.1%)	1042(100%)

2019년 ~ 2021년 일반사례 유형

연도	구분	차별	정보문의	불만민원	기타	파악안됨	합계
2019년	빈도	3	157	-	15	-	175
	비율	1.7%	89.7%	-	8.6%	-	100%
2020년	빈도	10	92	17	10	20	149
	비율	6.7%	61.7%	11.5%	6.7%	13.4%	100%
2021년	빈도	7	133	37	39	-	216
	비율	3.2%	61.6%	17.1%	18.1%	-	100%
계		20(3.7%)	382(70.7%)	54(10%)	64(11.8%)	20(3.7%)	540(100%)



2019년 ~ 2021년 학대 판정 현황

연도	구분	학대 사례	비학대 사례	잠재위험사례	합계
2019년	빈도	96	55	19	170
	비율	56.5%	32.4%	11.1%	100%
2020년	빈도	77	67	18	162
	비율	47.5%	41.4%	11.1%	100%
2021년	빈도	90	53	27	170
	비율	52.9%	31.2%	15.9%	100%
계		263(52.3%)	175(34.8%)	64(12.7%)	502(100%)

2019년 ~ 2021년 장애인 학대 유형(중복학대 포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신체적 학대	34	32.4%	31	34.4%	43	43.0%
정서적 학대	7	6.7%	23	25.6%	18	18.0%
성적 학대	11	10.5%	7	7.8%	15	15.0%
경제적 착취(노동착취 포함)	1	1.0%	2	2.2%	5	5.0%
경제적 착취(노동착취 제외)	37	35.1%	16	17.8%	17	17.0%
유기	-	-	-	-	-	-
방임	15	14.3%	11	12.2%	2	2.0%
계	105	100%	90	100%	100	100%

2019년 ~ 2021년 피해장애인 연령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9세 이하	25	26%	26	33.8%	20	22.2%	71(27%)
20대	19	19.8%	12	15.6%	18	20.0%	49(18.6%)
30대	16	16.7%	13	16.9%	12	13.4%	41(15.6%)
40대	17	17.7%	17	22.1%	18	20.0%	52(19.8%)
50대	14	14.6%	3	3.8%	10	11.1%	27(10.3%)
60대	4	4.2%	6	7.8%	10	11.1%	20(7.6%)
70대	1	1.0%	-	-	1	1.1%	2(0.8%)
80대	-	-	-	-	1	1.1%	1(0.4%)
계	96	100%	77	100%	90	100%	263(100%)

피해장애인 주장해 유형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체장애	5	5.2%	4	5.2%	4	4.4%	13(4.9%)
뇌병변장애	6	6.3%	3	3.9%	9	10.0%	18(6.8%)
시각장애	2	2.1%	1	1.3%	3	3.3%	6(2.3%)
청각장애	-	-	4	5.2%	2	2.2%	6(2.3%)
언어장애	-	-	-	-	1	1.1%	1(0.4%)
지적장애	74	77.1%	48	62.3%	54	60.0%	176(66.9%)
자폐성장애	4	4.1%	5	6.5%	3	3.3%	12(4.6%)
정신장애	2	2.1%	2	2.6%	5	5.7%	9(3.4%)
뇌전증 장애	-	-	1	1.3%	-	-	1(0.4%)
알수 없음	3	3.1%	9	11.7%	9	10.0%	21(7.9%)
계	96	100%	77	100%	90	100%	263(100%)

학대피해자 행위자 관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족 및 친인척	23	24.0%	38	49.4%	43	47.8%	104(39.5%)
타인	36	37.5%	33	42.8%	36	40.0%	105(39.9%)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33	34.4%	4	5.2%	9	10.0%	46(17.4%)
신고의무자가 아닌 기관종사자	3	3.1%	1	1.3%	1	1.1%	5(1.9%)
본인	-	-	1	1.3%	-	-	1(0.4%)
파악안됨	1	1%	-	-	1	1.1%	2(0.7%)
계	96	100%	77	100%	90	100%	263(100%)

사례 1

○ 신고 접수 내용

- 피해자는 30대, 여성, 지적장애인 2명으로 교회 전도사 가족과 함께 생활함.
- 반찬서비스를 하고 있던 복지관 담당자와 상담 과정에서 전도사가 오늘 때려 주간보호센터에 가지 않았다는 내용을 알게 됨.
- 피해자 1명은 무연고 장애인이며 또 다른 1명은 고령의 어머니로 인해 돌봄이 부재한 상황임.



○ 조사 내용 결과

- 피해자 폭행 내용 확인 : 폭행은 경리한지만 지속적으로 발생 한 것을 확인됨.
- 기초생활수급비 관리 확인 : 행위자(전도사)는 주민센터에 급여관리자로 등록하여 급여 관리 중으로 통장에 수급비 입금 즉시 현금 인출하여 행위자 거주지 공과금 납부, 식자재 구입 등으로 사용 확인함.
- 사회서비스 제공 내용 확인 : 피해자 1명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중이며 활동지원사는 행위자 지인이 서비스 제공함.
- 부당 가사 노동행위 : 피해자 중 1명은 매일 전도사가 있는 2층 집에서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가사 노동을 제공함.

○ 학대 판정 :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판정

○ 지원 내용

- 피해자 2명 분리 쉼터 거주지 지원
- 공공후견인 연계, 1명 장애 재판정을 통한 장애인 연금 수령 및 활동지원서비스 연계
- 행위자 수급비 횡령으로 경찰 고발

아래의 내용은 2018년 12월 8일 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www.bsaapd.or.kr) 장애인학대사례 모듬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편집한 것 입니다. (글작성 : 박용민 전관장)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 관련한 공무원들의 업무지침을 보면,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로 확인,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급여 관리 사용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임에도 본인이 타인의 급여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나(사적 자치의 원칙), 이런 경우에도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로 확인 점검”하게 합니다.

급여관리 필요로 하는 수급자의 범위로서는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동거하는 보장 가구원이 아닌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도 급여관리자 지정 필요”로 명기해놓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친인척에 의한 수급비 횡령이나 도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직계존속이나 3촌 이내의 친족이라도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관리자 점검 대상”으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 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따로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며, 반기별 급여관리 점검에서도 제외하도록 하여, 국가기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급여관리 점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해두기도 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지나친 고령이어서 실제로 급여 관리, 사용이 형제, 자매가 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이를 관리해야 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 하는 〈민법〉상 3촌 이내 친족(직계 비속 포함)”으로서 급여의 착취 유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점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급여관리자 지정의 경우,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자 중, 급여관리와 사용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며, “부양의무자 등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원거리 거주, 부당한 급여사용 우려, 부양의무자의 장애 등으로 급여 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담당자, 지역사회에서 지원이 용이한 지역인사 등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관리자 지정 시, (동의서 작성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부당 사용 관리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급여관리자는 급여를 지출한 경우 지출내역 기록 및 증빙자료(영수증) 관리와 관련 자동이체 및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읍·면·동장은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 작성”을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내 수급비 횡령을 차단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중 가족이 급여를 관리하는 경우, 영수증 보관, 관리로 지출 기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되, 가능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급여관리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수시로 현장 확인하여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는지 점검”하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 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도록 까지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길게 공무원 업무 지침 내용을 정리해두었는데, 한 줄로 요약 정리하자면 ‘정신/발달장애인의 급여관리는 지정된 급여관리자로 하되, 급여관리자 점검은 국가(주민센터)에서 점검하라’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문제는 전자도 잘 안 되고, 후자 역시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발달장애인의 급여관리는 무연고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담당자나 지역사회 인사, 후견인 등이 하지만, 연고가 있는 정신/발달장애인의 급여관리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이 합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실제, 급여 지출 내역을 확인해보니 장애인에게 지원된 수급비를 본인 가구의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장애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LH로부터 지원받은 가족은 해당 장애인이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의 월세 40만원을 장애인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문제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현실에서는 ‘급여관리는 급여 관리자가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전자도 잘 안 되었지만, 후자 ‘급여관리자의 운영을 국가가 점검하라’는 것 역시 잘 안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련의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은 급여관리자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하는 국가(주민센터)의 역할 부재가 좀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어느 장애인 가구는 한 달 동안 수급비로 받는 금액이 장애연금을 포함하여 약 155만원 정도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요. 그런데 이 돈을 장애인의 비장애인 남동생과 남동생의 아내가 전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통장 내역을 2004년부터 확인해보니 2018년 11월까지 약 1억 4천만 원의 수급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애인 동생 통장은 확인하진 못했지만, 이 통장 역시 비장애인 형제와 그의 아내가 관리하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약 2억 원 넘는 돈을 비장애인 형제와 그의 아내가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은 다른 아님, 그의 비장애인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급여를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보니, 정작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급여 관리 서류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만 있었고, 그 조차도 2017년 상반기는 영수증 일부조차도 없었습니다. 더욱 문제적이었던 것은 실제 그 지출 내역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장애인 형제, 자매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소요되는 전화비 등의 공공요금 약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식자재비 등으로 썼다고 증빙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수증 내역을 보니, 3~4일에 한 번씩 마트에서 장을 거의 10만원 전후로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영수증 중에는 장애인 형제, 자매가 썼다고 생각되지 않는 지출 내역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가 가질 않았던 것은 이런 지출을 하는데 있어 전부 현금을 빼서 지출하거나 아니면 비장애인 형제 본인의 신용카드를 썼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수급권자의) 체크카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중

요한 사실은 공무원 중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관이 조사 나갔을 때, 비장애인 형제의 아내 분은 ‘지금까지 누구도 이러한 점을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잘한다고 칭찬받았다’ 라고, 우리들에게 강변했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식자재 지출 중에는, 이들 세 명의 장애인 형제, 자매 (2명이 장애인이고, 나머지 1명은 비장애인이긴 하나,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실제 장애인입니다)의 식자재가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옷이라든지 그 외 장애인 형제, 자매에게 부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급비 관리 내역에 등장하는 지출만으로는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 이 세 명의 식자재 비용이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지출도 있습니다. 실제, 비장애인 형제의 아내 분은 자신들의 장 보는 것도 함께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고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꽤나 긴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음에도 어느 공무원 한 명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이들 장애인 형제, 자매는 비장애인 형제에 의해, 학대인 듯 학대 아닌 듯한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학대라고 하기에는 비장애인 형제의 아내 분의 말처럼 나름 최선을 다해 장애인 형제자매들을 돌보았던 자신들의 노동을 너무 폄훼하는 것이라는 점. 반면, 학대 아니라고 하기에는 장애인에게 지급된 수급비가 이들에게 쓰인다기보다는 오히려 비장애인 형제와 아내가 좀 더 많이 쓰는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요약하자면, 연고가 있는 장애인 수급비는 대부분 가족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받는다. 그런데 급여관리자인 가족이 해당 수급비를 장애인을 위해 쓰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을 위해 쓰는 것이 많다. 이것을 점검해야 할 주체인 국가(주민센터)는 이를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그로 인해 장애인 수급비가 횡령과 착취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으며, 우리 기관에서는 이를 학대로 간주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곤란함이 있다.

부산권익옹호기관은 2021년 부산시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을 배정을 받아, 독거 무연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수급비 관리 실태를 파악하려 하였으나 지자체 협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아 실시하지 못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사전에 예방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수급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권익옹호기관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관계 기관 및 지자체의 의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illegible]

울산광역시 장애인 급여관리 침해 및 경제적착취 사례

주 우 민 /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I

들어가면서

1. 장애인학대 피해 발생 현황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11에의해 2018년 1월 개관하여 지금까지 울산지역 관내 장애인 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학대피해장애인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 년도별 신고접수현황

신고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면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로 분류하고 절차에 따라 조사 및 사례판정 등을 실시한다.

반면, 장애인학대가 의심되지 않는 장애인은 복지 및 일반 법률상담, 정보제공, 정서적지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학대와 무관한 개인 간의 다툼이나 분쟁과 관련된 사례는 ‘일반사례’로 접수된다.

2018년부터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까지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는 총 666건이다.

이 중 학대가 의심되는 신고는 전체 신고 666건 중 61.6%인 410건을 차지하였으며, 일반사례는 전체 신고의 38.4%인 256건 이었다.

신고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합계(건)	비율(%)
학대의심	84	101	100	125	410	61.6
일반사례	47	79	67	63	256	38.4
계	131	180	167	188	666	100



2. 장애인 학대 판정 현황 및 특성

가. 학대발생현황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례판정하는 기관이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현장 조사’ 결과이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기간, 피해정도,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 내부 사례회의 또는 학대사례판정 위원회를 통해 학대여부에 대한 판단을 실시한다.

그 외 장애인학대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잠재위험사례’와 ‘비학대사례’로 구분한다.

본 기관의 4년간(2018~2021)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사례판정 현황을 살펴보면, 학대의심사례 총 410건 중 학대로 판정한 사례는 173건으로 전체의 42.2%에 해당하며, 비학대사례로 판정한 사례는 192건으로 46.8%, 잠재위험사례는 45건으로 11%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판정

(단위 : 건,%)

년도	2018	2019	2020	2021	계	비율
장애인학대사례	31	37	52	53	173	42.2
비학대사례	44	53	38	57	192	46.8
잠재적위험	9	11	10	15	45	11
계	84	101	100	125	410	100

나. 학대유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의 ‘장애인학대’에 대한 정의 내용에 기초하여 장애인학대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노동력 착취 포함), 경제(노동력 착취 제외), 유기, 방임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인학대 발생 시 하나의 학대 유형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중복으로 집계한 학대 유형을 기초로 분석하였다.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은 218건으로 그 중 신체적 학대가 90건(41.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순으로는 정서적 학대 59건(27.1%), 성적학대가 24건(11%), 경제적착취 (노동력착취 포함)가 16건(7.3%), 방임이 16건(7.3%), 경제적착취 (노동력착취 미포함)가 10건(4.6%), 유기가 3건(1.4%)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유형

(단위 :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합계(건)	비율(%)
신체적 학대	16	24	19	31	90	41.3
정서적 학대	12	11	15	21	59	27.1
성적 학대	5	3	10	6	24	11
경제 (노동착취포함)	8	3	3	2	16	7.3
경제 (노동착취 미포함)	-	-	6	4	10	4.6
유기	2	1	-	-	3	1.4
방임	3	4	6	3	16	7.3
계	46	46	59	67	218	100

다. 피해장애인 주장에 유형

장애등록을 한 사례 354건의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227건(6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장애 30건(8.5%), 뇌병변장애, 청각장애가 20건(5.6%), 지체장애 18건(5.1%), 자폐성장애 17건(4.8%), 시각장애 13건(3.7%), 언어장애 6건(1.7%), 뇌전증장애 2건(0.6%), 신장장애 1건(0.3%)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 주장에 유형

(단위 :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합계(건)	비율(%)
지체장애	5	3	6	4	18	5.1
뇌병변장애	4	5	4	7	20	5.6
시각장애	3	4	4	2	13	3.7
청각장애	1	5	5	9	20	5.6
언어장애	4	2	-	-	6	1.7
지적장애	40	52	57	78	227	64.1
자폐성장애	1	5	2	9	17	4.8
정신장애	8	11	4	7	30	8.5
신장장애	1	-	-	-	1	0.3
심장장애	-	-	-	-	-	-
호흡기장애	-	-	-	-	-	-
간장애	-	-	-	-	-	-
안면장애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뇌전증장애	1	-	1	-	2	0.6
계	68	87	83	116	354	100



3. 경제적학대 특성

가. 장애유형별 장애인 학대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장애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의 경우 정서적 학대가 80%, 신체적 학대 20%순으로 나타났으며, 뇌병변장애인의 경우도 신체적 학대가 50%로 높게 나타났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언어장애, 자폐성장아인, 정신장애인 또한 신체적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43.4%, 정서적 학대가 29.4%, 성학대 8.8%, 노동착취를 포함한 경제적 착취가 7.3%, 방임 5.9%, 노동착취를 제외한 경제적 착취가 3.7%, 유기 1.5%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경제적학대(노동력포함, 노동력제외)의 경우 전체 26건 중 발달장애인에게 15건이 발생 전체 장애 유형중 약 58%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장애인 학대

(단위 : 건,%)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 (노동착취 포함)	경제 (노동착취 제외)	유기	방임	합계
지체	총계	1	4	-	-	-	-	-	5
	장애유형 중%	20	80	-	-	-	-	-	
뇌병변	총계	5	2	1	1	-	-	1	10
	장애유형 중%	50	20	10	10	-	-	10	
시각	총계	4	2	-	-	2	-	-	8
	장애유형 중%	50	25	-	-	25	-	-	
청각	총계	5	2	1	1	2	-	-	11
	장애유형 중%	46	18	9	9	18	-	-	
언어	총계	2	-	-	1	-	-	-	3
	장애유형 중%	67	-	-	33	-	-	-	
지적	총계	59	40	12	10	5	2	8	136
	장애유형 중%	43.4	29.4	8.8	7.3	3.7	1.5	5.9	
자폐	총계	3	1	1	-	-	-	1	6
	장애유형 중%	50.2	16.6	16.6	-	-	-	16.6	
정신	총계	3	2	1	1	-	1	-	8
	장애유형 중%	30	20	10	10	-	10	-	
뇌전증	총계	-	-	-	-	-	-	2	2
	장애유형 중%	-	-	-	-	-	-	100	
미등록	총계	8	6	8	2	1	-	4	29
	장애유형 중%	28	21	28	7	3	-	3	
총계		90	59	24	16	10	3	16	218

나.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는 가족 및 친인척, 타인, 기관종사자, 파악안됨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률적 관계를 기준으로 가족 및 친인척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그 외 친척이 포함된다.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이 포함된다. 지인은 직장 동료, 선후배, 친구 등이 포함되며, 고용주는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기관종사자는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장애인활동인력 지원인력 및 지원기관의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그 외 사회복지관련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를 기준으로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135건(61.9%)로 가장 많았고, 타인에 의한 학대가 64건(29.3%)으로 뒤를 이었다.

가족 및 친인척의 학대사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88건(40.4%)으로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학대사례 중에서는 지인이 43건(19.7%)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학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이나 지인과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행위자수가 다수일 경우가 있어 중복으로 집계하고 있으므로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의 수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단위 : 건,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8	-	5	6	19	8.7
	부모	13	23	18	34	88	40.4
	자녀	3	1	1	-	5	2.3
	조부모	4	-	-	-	4	1.8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2	6	1	11	5
	그외친척	1	-	5	2	8	3.7
	소계	31	26	35	43	135	61.9
타인	동거인	-	2	-	-	2	0.9
	이웃	6	1	1	-	8	3.7
	지인	5	8	14	16	43	19.7
	고용주	1	1	2	-	4	1.8
	모르는사람	1	2	-	4	7	3.2
	소계	13	14	17	20	64	29.3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비율
기관 종사자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	1	-	-	1	0.5
	교육기관 종사자	-	3	5	-	8	3.7
	장애인활동인력 지원인력 및 지원기관 종사자	-	-	1	4	5	2.3
	의료기관 종사자	-	2	1	-	3	1.4
	그 외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2	-	-	-	2	0.9
	소계	0	0	0	0	0	0
	총계	46	46	59	67	218	100

II

사례 1

▣ 가족에 의한 경제적 착취 그리고 지인에 의한 경제적 착취

⇒ 학대내용

- 1)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모녀로써 남동생 내외랑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음.
- 2) 피해자는 행위자(남/동생)에게 오랜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었다고 함. 행위자(남/동생)는 2,0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 상환한 적 없으며 항상 현금으로 인출하여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고함.
또한 행위자(남/동생)는 피해자의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본인의 가족들과 거주 중이었고, 자동차도 할인받아 구매하였음.
긴급재난지원금 대리수령을 위해 세대주로 등록되어있는 피해자의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해 도장과 신분증을 요구하였음.
피해자(母)는 매월 받는 수급비를 행위자의 아내가 찾아와 1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가져갔다고 함.
- 3) 피해자는 더 이상 피해를 당하기 싫어 남동생집에서 도망을 쳐 여관에서 생활을 하는 도중 알게 된 지인에게도 경제적 착취를 당하여 신고를 함.

⇒ 학대유형

경제적학대, 정서적학대

⇒ 지원 및 조치

- 행위자와의 분리 :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입소 연계
- 사법지원 : 경찰 수사의뢰, 피해자 진술 시 동석 등
- 주거 및 자립지원 : LH 주택지원사업 연계· 이사 지원, 의식주 관련 자립 체제 지원

1. 기본정보

가. 인적사항

피해자1 : 여, 1944(78세), 지적장애 추정
 피해자2 : 여, 1980(42세), 지정장애
 행위자1 : 남, 1981(41세), 가족(남동생)
 행위자2 : 여, 30대, 지인



나. 신고자

비신고의무자(경찰통보)로 인해 남동생건 최초접수됨. 이후 행위자 2에 대한 경제 착취건은 피해자가 신고를 함.

다. 개입기간

2020년 05월 ~ 21년 11월

2. 신고접수

가. 신고내용

- 신고경위 및 내용
 - 행위의심자(남동생)이 피해자의 수급비와 급여 등을 착취하고 있으며, 긴급재난 지원금도 관리한다고 달라고 하여 지인의 도움으로 동생집에 나와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여 경찰통보를 받음.(20.5.20)
 - 경찰신고 후 도와준다는 명분하에 행위의심자2(지인)가 수시로 돈을 요구하여 가지고 갔다고 함.(20.08.20)

나. 신고에 대한 판단

- 최초 신고접수 당시 남동생으로부터 분리가 된 상황이라 추가적인 학대위험성은 낮다고 판단 함.
- 하지만 최초상담 이후 마음이 변해 더 이상 본 기관에서 지원을 받기 싫다고 연락을 받지 않음.
- 두 번째 신고접수 시 도와준 지인이 본 기관과 연락을 하지 말고 자신이 도와주 겠다고 하여 연락을 끊었다고 하며 현재 학대의심자2(지인)에게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있고 현 거주지에서 불안하다며 도움을 요청하여 긴급분리를 진행함.

3. 학대조사요약

- 20.05.20 신고접수의 건
- 피해자 4회, 행위자 4회, 관련자 7회
-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행위자인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함. 적은금액을 빌려갈 때도 있었고 큰 금액을 빌려갈때도 있었음. 매번 갚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갚은적은 없었으며 빌려주지않으면 해를 가할까봐 무서워서 빌려주었다고 함.

- 행위자는 통장 기록에 남지 않게 하기 위해 현금으로 출금하여 집안에 숨겨놓을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가져간다고 함. 피해자의 명의로 차, 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집 관련해서는 전세자금 대출도 받았다고 함. 이 모든 사실이 피해자가 동의한 부분이긴 하지만 두려워서 동의를 한 것이라고 함.
- 행위자는 이 사실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시인하였음.
- 20.08.20 신고접수의 건
- 피해자 7회, 행위자 1회, 관련자 2회
- 피해자는 동생의 경제적착취를 피해 지금의 행위자분의 도움을 받아 남창에 임시거주하고 있었음. 지난번 사건과는 별개로 지금의 행위자에게도 경제적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본기관에 스스로 신고하여 도움을 달라고 요청함.
- 행위자가 피해자의 통장에서 허락도 없이 돈을 출금하였다고 함.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썼다고 하지만 본인은 도움을 받은 적도, 돈도 받은 적도 없다고 함. 행위자는 피해자의 통장에서 약 1,000만원 가량을 출금하였음.
- 피해자는 본인이 인출하지 않은 내역은 통장에 동그라미를 쳐서 기억하고 있었으며 본인은 돈 출금할 일이 있으면 통장으로 출금하지 카드로 출금하지 않는다고 함.
- 피해자는 평소 행위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으며 녹음 된 내용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사소한일까지 간섭하는 내용과 도와주는 사람을 의심하면 안된다는 내용 등이 녹음되어있었음. 피해자는 행위자가 항상 도와주는 사람을 의심하면 나쁜사람이라고 하고 시달렸다고 함.

4. 사례판정

	판정에 대한 쟁점과 근거	판정
20.5.20 신고 접수의 건	1. 피해자의 진술과 통장내역을 통해 인출 한 내역 등 2. 명의도용(차량등록, 전세자금 대출) 확인 3. 모든사실 행위자도 행위에 대해 인정	경제적학대
20.08.20 신고접수의 건	1. ATM인출관련 자료 및 진술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함. 2. 도와준다 명목하에 본기관과 연락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남동생이 근처에 왔다고 겁을주는 등에 대한 공포심을 주었음. 3. 행위자는 모든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조사에 불응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사실이 명확함.	경제적학대 정서적학대



5. 사례지원

가. 주거지원

- 행위자와의 분리 :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입소 연계
- 주거 및 자립지원 : LH 주택지원사업 연계· 이사 지원, 의식주 관련 자립체제 지원

나. 사법지원

- 경찰 수사의회, 피해자 진술 시 동석 등 지원

다. 일상생활 및 의료지원

- 일상생활지원 : 생활안정 및 회복지원을 위해 지역내 복지관 연계
- 의료지원 : 우울증 및 심리검사 등에 대한 지원(병원동행)



사례 2

▣ 복지급여관리지정자에 의한 경제적 착취

⇒ 학대내용

- 1) 피해자는 시각장애를 가진자로서 요양보호사를 복지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생활하고 있었음.
- 2) 요양보호사가 수급비등 지출관리중으로 부식비 과다지출이 관찰되어
○○장애인복지관에서 신고접수 함.

⇒ 학대유형

경제적학대

⇒ 지원 및 조치

- 복지급여관리자의 관리감독 강화권고(시청, 해당구청)
- 해당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복지급여관리자 관리 강화 권고
- 피해자 건강 및 수급권확인

1. 기본정보

가. 인적사항

피해자 : 여, 1943(79세), 시각장애

행위자 : 여, 60대, 요양보호사

나. 신고자

신고의무자(장애인복지기관종사자)로 사례관리 대상자관리 중 수급비 대부분 부식비로 지출되고 있음을 인지하여 신고함.

다. 개입기간

2020년 02월 ~ 21년 02월



2. 신고접수

가. 신고내용

• 신고경위 및 내용

- 사례관리 기간 중 요양보호사와 서로 의논하여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나 수급비 80만원, 노령연금 30만원 총 110만원 중 용돈7만원, 가스비10만원, 병원 교통비 3만원 총2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 금액을 부식비로 소비하고 있다는 것에 의심이 들어 본 기관에 신고접수를 함.

나. 신고에 대한 판단

- ◎◎장애인복지관에 의하면 요양보호사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관계이며 시각장애 특성상 대부분을 요양보호사에게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하며 급여에 관한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함.
- 하지만 약90만원이 1인 독거가구에 부식비로 지출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의심이 들어 수급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함.

3. 학대조사요약

- 피해자 2회, 행위자 2회, 관련자 9회
- ☆☆동행정복지센터에 보고된 6개월간의 영수증을 확인한바 몇가지 의문의 항목이 있었음. (믹서기, 압력밥솥, 김밥, 떡, 영양제, 아이스크림, 국수)
- 피해자에게 확인한바 잘모르겠다고 대답함.
- 요양보호사에게 확인한바 믹서기와 압력밥솥은 자신의 것이며 할머니에게 팔았다고함. (필요에 구입한 물건이 아닌 자신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함)

4. 사례판정

가. 경제적학대로 판정함

나. 판정에 대한 쟁점과 근거

- 피해자는 요양보호사와의 관계가 밀접하고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받다보니 경제적착취인줄 모르고 있음.
- 1인 독거가구의 생활비중 90% 가까이 부식비로 지출되어 지고 있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자신이 사용한 물건을 판매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가지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착취로 판단이 됨.

5. 사례지원

- 이 사례는 피해자는 조사하는 기간내에 수급비 착취에 대해 아는 부분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음. 이는 요양보호사와의 관계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이 됨.
- 이에 본인은 피해사실이 없어 지원받기를 거부함.

가. 시청 및 해당 구청 사실 보고

- 해당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복지급여관리자 관리 강화 권고

나. 수급비사용 내역 보고 모니터링 강화

- 본 기관에서 모니터링 예정

다. 지역 내 유관기관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IV 정리하면

발표한 사례처럼 발달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관리 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가족, 친인척이 관리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장애인 수당 등을 개인 용도로 빼서 쓰거나 편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에서도 학대행위자들은 모두 일관되게 피해자가 돈 관리를 잘 못하니 자신이 돈을 관리해준 것이고, 나중에 목돈을 챙겨주려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한다. 위 사례와 같이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건넬 경우 증거가 없으므로 경찰조사를 진행하여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장애인들은 범죄피해를 입어도 자신이 피해를 입었는지도 알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 하는 일도 쉽지 않아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되거나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다.

최근에는 가족 및 친인척의 관계에서 발생한 경제적 착취 역시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장애인대상 범죄인 경우 배제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친족 간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착취하는 것이 용인되지 않고 범죄로 인정된다는 것을 많이 알려 주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 신고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지역사회에서 함께 감독의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illegible]

장애인 급여관리자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한 경남지역 사례 및 제언

송 정 문 /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I

들어가며

지난 2020년,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착취 사건이 크게 부각되면서,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이 신고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해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옹호 및 권리구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경상남도과 함께 장애인권 실태조사를 기획하여 2021년도에는 경남지역 1인 발달·뇌병변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인권 실태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 응한 498가구 중 학대의심 사례는 71건(14.3%)이나 되었고, 이 중 경제적 착취로 접수된 사례는 49건(학대의심 사례 중 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다수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었다(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

주요 피해 내용으로는, ▲학대의심자가 장애인의 금전관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급여관리자가 되어 통장을 가져가 학대의심자가 착취한 사례, ▲장애인에게 주어진 공공급여임에도 당사자의 사용을 제한한 사례,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사례, ▲장애인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학대의심자가 사용하면서 요금을 미납한 사례,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까지 착취한 경우, 노동을 시키고 그에 걸맞은 급여를 주지 않은 사례 등이었다(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

최근 3년간(2019~2021)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본 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에서도 경제적 착취 사례가 27.3%로 확인되어, 금전관리에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경제적 착취가 매년 많은 피해사례로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급여관리자로서 장애인의 금전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어 2022년도 실태조사의 대상은 ‘급여관리자(타인 또는 직계 외 친인척)가 지정된 발달·뇌병변장애인’으로 정해 심층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본 기관에 접수된 관련 사례 중에서 세 가지 사례의 소개를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함께 논의해 보았으면 한다.



1. 경남지역 급여관리자에 의한 학대 사례 소개

가. 지인인 급여관리자에 의한 10여 년 동안의 착취 사례

1) 기본 정보

- 피해장애인 : 50대, 남, 심한 지적장애
- 학대행위자 : 60대, 남, 지인

2) 접수내용

- 급여관리자가 약 10년 동안 피해장애인의 동의 없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수급비, 장애연금 등을 모두 착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여관리자의 과수원에서 일을 시키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3) 현장조사 결과

- 피해장애인은 과거 거주지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어느 지인의 소개로 10여 년 전 학대행위자를 알게 되어 과수원 일을 하는 조건(1개월에 20만원)으로 학대행위자의 집에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게 되었음.
- 그런데 피해장애인이 약 10년 동안 과수원에서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학대행위자는 피해장애인에게 나오는 공적급여(기초수급비, 장애연금 등)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장애인의 통장에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착복한 상황이 확인되었음.
- 당시 피해장애인은 공적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학대행위자에 대해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4) 판정 결과

- 경제적 착취의 학대로 판정(노동력착취 포함)

5) 지원 내용

- ① **거주지원** : 현장조사 당시 확인된 결과에 따라,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장애인을 응급조치(분리조치)하였으나, 남성피해장애인이 갈 수 있는 피해장애인쉼터가 지역 내에 없어 지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립홈 중 입주 가능한 곳을 물색하여 입소지원함. 이후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판단 및 피해장애인의 선택에 따라 최근 최종 독립하여 LH임대주택(신청 지원)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음.

- ② **사법지원** : 학대행위자를 고발조치하였으며, 그 결과 징역3년(집행유예5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음. 또한 피해장애인에게서 착취한 공적급여 및 노동임금을 산정하여 총 8,000만원을 모두 변제받도록 지원하였음.
- ③ **복지지원** : 피해장애인은 약 10년 동안 의식주를 모두 학대행위자에게 의존하여 해결하였던 터라 혼자 독립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어 자립홈 입주 당시 다소 두려움이 있었음. 이에 지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사례연계를 통해 일상생활, 자립생활 등 IL프로그램 내에서 관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함. 또한 활동지원사 파견 요청하여 지원하였음.
- ④ **상담지원** :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통해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6) 피해장애인의 현재 상황

- 피해장애인은 그동안 자신의 권리를 앗아간 학대행위자의 행위를 인식하고 있으며, 학대행위자가 더 이상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처벌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안도하고 있음.
- 또한 피해장애인은 그동안 자신이 받았어야 할 돈을 모두 변제받은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고 있음.
- 현재 활동지원 등 필요한 복지지원과 함께 스스로 돈을 관리하며 지내고 있는데, 본 기관에서 연락할 때마다 매번 ‘학대행위자로부터 탈출시켜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반복함.

7) 지원 중 힘들었던 점

- 지역 내에 남성피해장애인이 갈 수 있는 피해장애인 쉼터가 없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조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음.
사실상 피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행히 의사소통 등이 원활하여 자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지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립홈에 입주할 수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립가능성이 낮은 경우 자립홈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성피해장애인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가 필요.
- 학대행위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이 대다수 쉬쉬하여 증언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소규모 마을 내에서의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
- 10여 년간 착취한 금액 8,000만원을 변제받은 것이나, 갑자기 많은 수입이 생기면서 기초생활수급 탈락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



나. 가족(형제자매)인 급여관리자에 의한 10여 년 동안의 착취 사례

1) 기본 정보

- 피해장애인 : 50대, 여, 심한 지적 및 정신 중복장애
- 학대행위자 : 50대, 여, 언니

2) 접수내용

- 피해장애인의 급여관리자인 학대행위자가 피해장애인의 동의 없이 공적급여(기초수급비, 장애연금 등)을 모두 착복하고 있으며, 신체적 학대 또한 의심된다는 내용.

3) 현장조사 결과

- 피해장애인은 언니인 학대행위자와 약 10여 년간 함께 살고 있는데, 학대행위자는 피해장애인의 법적 보호자이자 급여관리자로 확인되었음.
현장조사 당시 학대행위자는 급여관리자로서 매월 해당 행정기관에 피해장애인의 공적급여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있기에 금전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자체의 관리감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학대행위자는 피해장애인의 통장, 복지카드, 신분증을 모두 가지고 관리하고 있었으며, 10여 년 동안 피해장애인의 통장에서 학대행위자의 가족 및 타인 6인에게 각각 여러 차례로 나누어 총 3천 여 만원을 이체하였고, 약 1,200만원의 현금을 찾아 피해장애인 의사와 상관없이 착복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음.
- 또한 피해장애인의 진술을 통해 폭행뿐만 아니라 방임의 정황도 확인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피해장애인이 이용하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소장(신고의무자)이 본 기관에 신고할 목적으로 피해장애인의 얼굴에 명든 사진과 상흔이 발견된 즉시 사진촬영을 해 둔 것을 제공받아 신체적 학대 또한 확인되었음.
- 당시 피해장애인은 본인에게 공적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학대행위자를 매우 무서워하고 있었으나 자신에게는 돈도 없고 혼자 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학대행위자와 계속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4) 판정 결과

- 경제적 착취 및 신체적 학대, 방임으로 판정

5) 지원 내용

- ① **거주지원** : 현장조사 당시 확인된 결과에 따라,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장애인을 응급조치(분리조치)하여 경상남도학대피해장애인쉼터(이하, 쉼터)로 입소지원함. 이후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판단 및 피해장애인의 선택에 따라 최근 최종 독립하여 주택(월세임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음.
- ② **사법지원** : 학대행위자를 고발조치하였으며, 현재 검찰조사 진행 중임.
- ③ **복지지원** : 쉼터의 복지지원을 통해 활동지원, 금전관리 지원 등이 이루어졌음.
- ④ **의료지원** : 장애재판정을 위한 병원 동행지원을 하였으며, 질환과 관련한 병원 치료 시에도 쉼터와 함께 지원하고 있음.
- ⑤ **상담지원** :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통해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 도모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6) 피해장애인의 현재 상황

- 피해장애인은 그동안 자신의 권리를 앗아간 학대행위자의 행위를 인식하고 있으며, 학대행위자로부터 벗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고 있음.
- 현재 활동지원을 비롯해 복지관을 통한 프로그램 참여 등 필요한 복지지원과 함께 스스로 돈을 관리하며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여행, 영화관람 등)을 즐기고 있음. 이에 본 기관에서 연락할 때마다 매번 반가워하며 하루 일과를 전해주고 있음.

7) 지원 중 힘들었던 점

- 그동안 장기간 학대를 받으며 살아왔다 보니 외상 후 스트레스가 매우 큼.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나타내고, 대인관계를 매우 어려워하고 있어 심리상담이 필요하지만, 범죄피해 심리상담 지원을 하는 기관에서도 지적장애인 상담이 어렵다고 하여 병원진료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임.
- 이에 지적장애인 범죄피해자 심리상담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필요.

다. 활동지원사이자 급여관리자에 의한 명의도용 착취 사례

1) 기본 정보

- 피해장애인 : 40대, 여, 심한 뇌병변장애(언어장애 중복)
- 학대행위자 : 40대, 여, 활동지원사



2) 접수내용

- 피해장애인의 활동지원사이자 급여관리자인 학대행위자가 피해장애인의 동의 없이 피해장애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카드대출을 받아 사용하여, 카드사로부터 피해장애인이 1,300만원에 대한 상환독촉 청구를 받고 있다는 내용.

3) 현장조사 결과

- 피해장애인이 30여 년 전부터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인 학대행위자가 평소 말벗이 되어주는 등 도움을 주어 활동지원 제도를 알게 된 이후부터 학대행위자를 활동지원사로 이용하였으며, 현장조사 당시 피해장애인의 급여관리자로도 등록되어 있었음.
- 현장조사 당시, 피해장애인이 가지고 있던 상환독촉 고지서를 확인하니 약 1,300만원의 카드론 대출에 대한 상환요구였으며, 피해장애인은 카드발급한 적이 없을뿐더러 카드론 대출을 받은 바도 없다고 진술함.
- 해당 신용카드사에 요청하여 대출신청 당시에 본인확인을 위해 녹음된 목소리를 확인하니 발음이 분명한 여성의 목소리로서,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장애인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음.
- 이에 학대행위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목소리를 확인하니 신용카드사에 녹음된 목소리와 유사하여, 직접 학대행위자를 만나 ‘목소리 대조 수사의뢰를 할 것이며 그 결과 일치할 경우 본 기관에서 관련 죄목으로도 고발하겠다’고 밝히니 당장 목돈이 급하여 대출을 받은 것을 인정하였으며 ‘곧 갚을 것’이라고 진술함.
- 피해장애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고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장애인은 ‘학대행위자가 지금까지 자신의 친구가 되어 준 좋은 사람이어서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며 ‘학대행위자가 돈을 갚는다면 법적조치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함.
- 본 기관의 현장조사 이후, 학대행위자는 곧바로 400만원을 갚았으나 나머지 900만원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갚지 않은 것을 확인.

4) 판정 결과

- 경제적 착취의 학대로 판정

5) 지원 내용

- ① **사법지원** : 피해장애인이 고발을 원치 않았으나 고발하지 않을 경우 남은 9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로서 설득하니, 학대행위자가 돈을 갚을 경우 자신의 의사로 취할 수 있는 고소를 원하여 고소에 대한 사법지원을 하였음.

그 결과, 검사의 중재로 학대행위자가 피해장애인의 명의로 대출한 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이후 기소유예로 종결됨.

- ② **복지지원** : 해당 지자체에서 피해장애인의 활동지원사를 변경하고, 학대행위자의 급여관리자 자격을 취소.

이 외에 본 기관에서는 장애인단체 가입과 복지관 등 친목프로그램 이용 등의 지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는 이용할 만한 시설이나 단체 프로그램이 없었고 피해장애인의 몸이 매우 약하여 먼 외부지역 시설 등의 이용을 거부해 다른 지원을 하지 못함.

- ③ **상담지원** : 학대행위자와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피해장애인이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사법지원이 모두 종결된 후 학대행위자가 피해장애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원하여 피해장애인과 만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피해장애인이 너무 기뻐하며 활력을 되찾음.

이에, 본 기관에서는 학대재발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혹시 또 이런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본 기관에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방법 등을 피해장애인과 동네 지인분들에게 여러 차례 안내함.

6) 피해장애인의 현재 상황

- 피해장애인은 지금까지 단짝처럼 지냈던 친구를 잃지 않고, 대출 문제도 해결된 것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 함.
- 학대행위자는 그 이후로 피해장애인의 금전관리 등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가끔씩 찾아와 같이 산책을 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7) 지원 중 힘들었던 점

- 심한 뇌병변·언어 장애가 있는 피해장애인이 약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없었기에, 학대행위자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였음.
무엇보다 살고 있는 동네가 외진 곳이라 활용할 만한 이용시설이나 장애인단체도 부재하여 충분한 복지지원이 어려웠음.
- 장애인이 처한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학대를 받고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도움 요청하기조차 힘들 수 있고, 학대에서 벗어나더라도 학대행위자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학대재발 우려도 염려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복지인프라가 적은 군 지역, 시 외곽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이용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설치될 때까지는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을 지원하여 관계망 및 인권침해 신고체계가 수립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본 기관에서 지원한 ‘급여관리자에 의한 장애인학대’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급여관리자에 의한 장애인학대는 대부분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함께 자행되기도 한다. 특히 직계가족이든 먼 친척이든 간에 가족·친인척이 급여관리자로서 학대하는 경우에는 방임까지도 자행되고 있다.

본 기관에서 지원하는 과정에 힘들었던 점을 토대로 대책이 필요한 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내에 남성피해장애인이 갈 수 있는 피해장애인 쉼터가 필요하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심리상담이 가능한 범죄피해지원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셋째, 복지인프라가 적은 군 지역, 시 외곽지역 등에 이용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설치될 때까지는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을 통한 관계망 지원 및 인권침해 신고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2년에 걸쳐 실태조사를 주관한 기관의 입장으로서는, 두 가지를 더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급여관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보완이다. 물론 복지부 지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보건복지부의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살펴보면, 급여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 관리감독의 세부 방식 등은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급여관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기초지자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기관에서 사례지원 중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서류상의 지출내역 확인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를 꼼꼼히 살피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장애인의 급여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찾기 힘들 뿐더러 적절한 수당 등이 제공되지 않다보니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조차 급여관리자에게 개선지시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인구가 적은 외곽지역일수록 이러한 상황은 더 심했다. 결국 영수증 등의 증빙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급여관리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기에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본 기관의 지원 사례 중에는 비장애인이 한 장애인과 친분을 쌓아 금전관리까지 도와주는 지인이 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남은 재산을 모두 지인에게 상속한다.’는 공증문서를 받아놓은 경우도 있었다. 당시 그 지인이 장애인을 실족사 하게 할 수도 있음이 염려되어 경찰을 통해 구속수사가 이루어졌다.

허나 이 경우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상하게 여긴 이웃의 신고를 통해 해당 공증문서가 드러나 사전조치가 가능했지만, 그러한 이웃조차 없는 장애인이라면...?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부디, 이런 끔직하고 불행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급여관리 체제를 비롯하여 급여사용 및 관리 방식이 보완되기를 희망해 본다.

다른 하나는,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서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매년 민관 협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보다 앞서 찾아내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 가정방문 형태의 ‘민관협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민관협력 실태조사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행정조직 내의 불만과 민간조사원들의 민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위지역 공무원의 관리감독이나 사례관리만으로는 관련 장애인학대 사례를 찾아내지 못해왔다. 실제로 본 기관에서 2년 동안 이 실태조사를 주관하면서 담당 사례관리 공무원에 의해 확인한 학대의심 사례는 매우 적었다. 그런데 장애유형별 특성 및 인권 개념 등을 잘 알고 있으며 언어·발달장애인과 상담가능한 민간인력을 모집하여 실태조사원 교육을 실시해 파견한 조사원을 통해서는 매년 많은 학대의심 사례가 발굴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조사원만으로도 수행하기는 어렵다. 학대 등 인권침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각종 문서, 통장내역, 우편물, 휴대폰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민간인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으로 자료열람을 할 수 있는 본 기관의 직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행한다면 가능한 일이지는 하지만, 학대신고 사례를 제쳐두고 몇 달간 실태조사에 모든 직원을 투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는 어떤 기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든 간에, 힘들더라도 민관 협력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상호 부족한 점이 보완되어 제대로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장애인학대가 발생했음에도 10년이 넘도록 아무도 몰랐다”는 슬픈 사례가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그렇기에 스스로 학대신고를 하고 권리구제하기 힘든 장애인을 생각한다면, 장애인 학대 등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신고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민관협력 방식의 정기적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illegible]

장애인 인권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장 진 영 /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담당

장애인 인권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경 상 남 도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목 차



I. 2022년 경상남도 장애인 인권관련 사업 추진 현황

1. 장애인 인권사업 지원

- 가. 장애인 인권 증진 역량강화
- 나. 장애인 인권 교육 사업
- 다. 장애인 동료상담사 양성교육

2. 인권관련 기관 및 시설 운영 지원

- 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 나.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 다. 인권센터 운영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장 사업 추진





목 차



Ⅱ. 2023년 장애인 인권사업 추진 계획

1. 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

- 가. 종사자 충원 및 처우개선
- 나.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2. 쉼터 추가 설치

- 가. 학대피해장애인가동 쉼터 설치
- 나. 성폭력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

3.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 연구용역 추진

[참고] 장애인 여행권 보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I. 2022년 경상남도 장애인 인권관련 사업 추진 현황



1. 장애인 인권사업 지원

가. 장애인 인권증진 역량강화사업

□ 사업목적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장애인 인권 보호
-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으로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권증진
- 장애인 인식개선 및 교육을 위한 강의활동으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비('21년) : 80,000천원(도비) ※ 최초시행 : 2014년
- 보조사업자 : 사)경남장애인인권포럼 문숙현
- 종사자 : 1명

□ 사업내용

- 전문강사 양성교육
- 장애인 역량강화
 - 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한 사회참여 활동(동료상담 및 체험활동)
 - 강사단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포럼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영상개발
-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사업체 및 교육시설 등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 홍보 교육을 위한 강사파견

1. 장애인 인권사업 지원

나. 장애인 인권교육사업

□ 사업목적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장애인 인권 보호
-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인식 개선 장애인의 사회통합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비('21년) : 60,000천원(도비) ※ 최초시행 : 2016년
- 보조사업자 : 사)경남장애인인권권리옹호네트워크, 박훈, 이해진
- 종사자 : 1명

□ 사업내용

- 연구사업 : 교육자료 개발(교육자료개발, 책자제작, 도구개발 등)
- 장애인 강사양성 교육, 장애인 강사단 교류 및 평가회
- 파견교육사업 : 찾아가는 인권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파견
- 홍보사업 : 홈페이지 운영, 리플릿·홍보용품 제작 및 배포



1. 장애인 인권사업 지원

다. 장애인 동료상담사 양성교육

□ 사업목적

- 장애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료상담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을 갖춘 동료상담사 양성으로 장애인복지 증진

□ 사업개요

- 사업비('21년) : 60,000천원(도비60,000) ※ 최초시행 : 2018년
- 보조사업자 :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윤차원
- 종사자 : 1명

□ 사업내용

- 장애인 동료상담사 3급 민간자격증 취득 교육
 - 대상 :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지역 거주 장애인
 - 내용 : 이론교육 및 동료상담 실습 등
- 동료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 대상 : 집단동료상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 내용 : 동료상담가 리더양성을 위한 교육
- 동료상담가 보수교육
 - 대상 : 장애인동료상담사 3급 자격증 소지자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가

2. 인권관련 기관 및 시설 운영 지원

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 개 소 일 : '17. 9. 27.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5, 210호(중앙동, 리제스타워)
- 운영방법 : 위탁 운영(공모 수탁기관 선정)
 - ※ 위탁기간 : 3년6개월 ('20.7.1. ~ '23.12.31.) 재위탁됨, (1회차'17.7.1. ~ '20.6.30.)
- 사 업 비 : 415,000천원(국비 103,326 도비 311,674)
 - ※ 사업비 중 인권실태조사 15,000천원(도비) 편성 (권익옹호기관→경남연구원 위탁)
 - ※ 보조비율 : 국비 50%, 도비 50%이나 도비 추가지원함
- 보조사업자 : 사)경남장애인인권권리옹호네트워크 박훈, 이혜진
- 근무인원 : 7명(기관장1, 팀장2, 상담3, 행정1)
- 사업내용 : 장애인학대 사례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조속한 권리구제 방안 마련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 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조례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업무

2. 인권관련 기관 및 시설 운영 지원

나.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피해장애인 쉼터)
- 위치 : 창원시 성산구 소재(비공개시설) ※ 전용면적/구조 : 127.57㎡/1층, 사무실 1개, 방 3개, 화장실 2개
- 운영주체 : 도 위탁(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 지원대상 : **1개소**
- 종사자 : **4명**(시설장 1명, 생활지도원 3명 ※ 하반기 1명 총원 예정)
- 2022년 총 사업비 : **334백만원(국비 84, 도비 250)**
 - 운영지원 : 324백만원(국비 84, 도비 24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도비 추가 지원
 - 종사자 수당 : 10백만원(도비)
- 세부사업내용
 - 임시보호 : 피해장애인의 긴급 분리, 숙식 및 쉼터 생활, 의료 지원
 - 상담지원 :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 의료지원 : 응급치료 지원,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지원, 의료지원 연계
 - 사회복귀지원 : 일상생활 훈련,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등
- 이용기준
 - 운영시간 : 주7일, 24시간 운영
 - 입소정원 : 8명
 - 입소대상 : 여성 및 만13세 이하 아동 장애인
 - 입소절차 : 경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한 입소
 - 이용기간 : 3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장 가능)

2. 인권관련 기관 및 시설 운영 지원

다. 인권센터 운영 지원

- 최초 시행 연도 : 2020년
- 사업대상 : 도내 장애인
- 사업내용 : 시군 인권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시행주체 : 창원시(창원, 마산, 진해), 밀양 ※ **8개소 운영 중**
- '22년 사업비 : 600백만원(도비 240, 시군비 360, 도 40% 시군 60%)
 - 당초 '22년 사업비의 75% 확보 후 부족분 추경 편성(1회추경)
 - '21년 사업비 : 600백만원(도비 240, 시군비 360, 도비 40%, 시.군비 60%)
- 근무인원 : 3명(센터장 1, 직원2)
 - ※ 인건비 지급 기준 :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일반직)
- 주요업무 : 장애인차별상담 지원, 법률구조활동, 교육, 홍보 사업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장 사업추진

가.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권익지원담당 소관 사회복지법인 지도 점검

- 기 간 : (시설) '22. 8. 1. ~ 8. 31. (법인) 9월 ~ 12월
- 대 상 : 장애인 거주시설 44개소(공동생활가정 제외) 및 장애인권익지원담당 소관 34개 법인
 - (거주시설) 44개소(거주 33, 단기 11)
 - (운영법인) 34개(유형별거주시설 운영법인 19, 단기 7, 공동생활가정 3, 지역사회재활 5)
- 점 검 자 : 도(장애인권익지원담당외 2인) 및 시군 담당자
- 점검내용
 - (시설)장애인 인권관련 사항, 인권지킴이 운영 현황 등
 - (법인)정관관리, 이사회(임원) 구성 현황, 이사회 및 회의록 관리 실태, 법인 기본재산 및 후원금 관리 실태 등
- 조치계획
 -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 경고 등 행정처분 등 조치
 - 수범사례 및 적발사항 등 점검 결과 공유 등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장 사업추진

나. 인권지킴이단 일제정비 및 운영 활성화

① 인권지킴이단 일제 정비

- 기 간 : '22. 8. 1. ~ 8. 12.
- 대 상 : 인권지킴이단 44개소 (유형별 거주 33개소, 단기거주 11개소)
- 정비방법
 - (인권지킴이단 구성 현황 파악) 시설별 1개의 인권지킴이단 설치 여부, 관련 규정 유무 확인, 단원 적격 여부 및 관리현황 확인
 - (인권지킴이단 활동 실적 파악) 회의 종류 및 개최 횟수, 회의내용 기록 및 보고, 외부 감시 체계 정례화 등 확인

②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 기 간 : '22. 11월~
- 대 상 : 인권지킴이단 44개소 (유형별 거주 33개소, 단기거주 11개소)
- 세부내용
 - (인권지킴이 대상 교육 강화) 인권지킴이단원 대상 도 주관으로 연1회 이상 집합 교육 실시 (인권지킴이 역할, 인권침해 의심 사례 확인 방법, 신고·진정·고발 방법 등 교육)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장 사업추진

다. 거주시설 대상 폐쇄회로 TV 설치 추진

- 기간 : '23. 6월 ~
- 대상시설
 - 장애인 인권보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폐쇄회로 TV 설치를 희망하는 장애인거주시설
 - 인권침해 및 학대 등의 문제로 진정·고발 등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 세부내용
 - **(대상 시설 선정)**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시 폐쇄회로 TV 설치 희망거주시설 파악 및 선정 시군 및 장애인 인권관련 기관을 통해 인권침해 및 학대 등의 문제로 진정·고발 등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중 동의과정을 통해 대상 시설 선정
 - **(재원마련)**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23년 추가사업으로 추진)으로 추진
- 사전 이행 사항 : 장애인거주시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사전 합의 절차 이행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장 사업추진

라.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인권 교육 강화

- 기간 : '22. 10월부터
- 대상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96개소 (공동생활가정 포함)
- 세부추진내용
 - **(종사자 인권교육의 50%이상 외부 교육 실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연2회 8시간 중 50%인 연1회 4시간은 시군에서 주관하는 인권 교육 실시
 - ※ 현행 : 연2회 8시간 시설 내 자체 인권교육 실시
 - **(이용자 인권교육 강화)** 외부 강사 및 인권지킴이단을 활용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 ※ 현행 : 연1회 4시간 시설 내 자체 인권교육 실시
- 조치 사항
 - 공신력있는 인권교육 전문기관 및 강사풀 확보
 - 시군 및 시설협회와의 의견 조율 등



Ⅱ. 2023년 장애인 인권사업 추진 계획



1. 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

가. 종사자 충원 및 처우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종사자의 과다한 업무 : 장애인구가 비슷한 규모인 광역지자체 권익옹호기관보다 적은 종사자 수, 반면 훨씬 넓은 지역을 담당해야함에 따라 종사자 1인당 업무량 과다
- 시설 종사자보다 열악한 보수 : 기본적인 임금체계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에 따르고 있으나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 수당 미지원으로 시설종사자보다 낮은 임금 수령
- ☞ 종사자 사기 저하 및 잦은 퇴사로 결원 발생

○ 개선방안

- 종사자 충원 및 가계보조수당 등 지원할 수 있도록 2023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

나.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장애인 인권기관 네트워크 구축

- 종사자 대상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으로 전문성 강화
- 정보교류, 장애인 인권보장, 차별해소, 학대예방을 위한 지역간,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

2. 피해장애인 쉼터 추가 설치

가. 학대피해장애인 아동 쉼터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여성장애인과 18세미만 아동 장애인(성별무관)을 위한 쉼터 1개소 운영 중
 - 장소가 협소하고 18세 미만 남자 아동 장애인도 함께 보호 중이라 연령별 성별 개별적 서비스 제공 애로
-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장애인가동을 위한 쉼터를 광역지자체별 1개소 설치 계획에 따라 2023년 실시할 예정인 장애아동 쉼터 공모에 응모하여 쉼터 1개소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나. 성폭력피해여성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여성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임.
 - 현재 성폭력피해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없어 성폭력피해여성장애인은 일반 성폭력피해여성 쉼터에서 보호 및 서비스 제공 중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피해여성장애인을 위한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애로
- 개선방안
 - 성폭력여성장애인 피해쉼터 1개소 설치 및 운영 예정('22년 설치 중에 있으며, '23년부터 운영 예정)

3. 탈시설 및 자립지원 연구 용역 실시

□ 추진배경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전환(보호·재활 → 자립생활·사회참여)에 따라 경남형 자립생활 지원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로드맵 필요
- 정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1.8.2)의 신속·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인프라 조성

□ 용역 개요

- 기 간 : '22. 10월 ~ '23. 6월(8개월)
- 용역기관 : 경남연구원
- 주요내용
 - 도내 장애인(시설, 재가) 장애인 자립 지원 조사 및 분석
 -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도내 각종 자원 현황조사 및 분석
 - 거주시설 주거변환 단계별 추진 체계 및 모형 개발
 - 국내 자립생활지원(탈시설) 정책 분석(성공사례, 실패 시 대안 등)
 - 경남 자립생활지원 로드맵 실행에 대한 종합분석



[참고] 장애인 여행권 보장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 추진배경

-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인 여행권 및 이동권 확대 요구
- 장애인을 위한 여가생활 서비스 지원 욕구 증대

□ 협약개요

- 일 시 : 2022. 12. 2.(금) 11시
- 장 소 : 경남도청 중앙회의실
- 협약기관 : 5개 기관(도,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금호리조트,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 주요내용
 - 도내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189천명) 및 동반가족에게 리조트 시설 이용료 할인(회원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할인, 리조트별 할인요금표 참고)
 - 장애인 친화 시설 인증서 및 현판 교부 및 홍보
 - 기타 장애인복지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상시 협력 등

**2022년 부산·울산·경남
장애인 급여관리 현황등 모니터링 결과발표회**

인 쇄 : 2022년 11월

발 행 : 2022년 11월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주 소 : (476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회관 8층

전 화 : (051) 710-9718 FAX : (051) 710-9717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인쇄처 : 반석인쇄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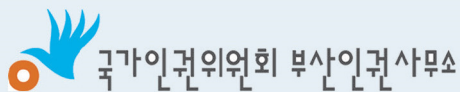
전 화 : (051) 851-1702 FAX : (051) 851-5702

ISBN 978-89-6114-909-9 9333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2년 부산·울산·경남
**장애인 급여관리 현황등
모니터링 결과발표회**
.....



ISBN 978-89-6114-909-9 93330